

# 기술용역 [설계, 사업관리] 발주법령 및 실무 매뉴얼

2016. 4. 20.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고시(공고)한 내용과 현행법령 등을 발췌 요약 정리하고, 일부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건설기술용역 업체선정 실무  
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집 정리한 사항으로 최신 법령의  
개정여부와 관련법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검토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경영관리본부 / 업무부 이사 박철용 T 070-7416-4545 / H 010-3404-0751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요약표 [행정자치부 예규 제 39 호]**

| 구 분                                                                        |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    | 금액범위<br>(VAT제외) | 종합<br>평점 | 지 역<br>참여도<br>점 수<br>→<br>P Q<br>점 수<br>환 산 | 수행<br>능력<br>점수 | 입찰<br>가격<br>점수 | 지역<br>참여<br>도<br>점수 | 경<br>영<br>상<br>태 | 적격<br>환산<br>기술<br>점수 | 적 기<br>점<br>수 | 최 저<br>낙찰률 | 1점당<br>투찰율 |
| 행자부예규<br>제39호<br><br>지역공동<br>30%이상<br><br>(타 법령<br>20%이상)<br>지역참여도<br>: 3점 | 1  | 30억이상           | 85       | 4.61점                                       | 65             | 30             | 3                   | 2                | 50                   | 76.93         | 72.995%    | 0.65%      |
|                                                                            | 2  | 10억이상~<br>30억미만 | 90       | 4.61점                                       | 65             | 30             | 3                   | 2                | 55                   | 84.62         | 77.995%    | 0.65%      |
|                                                                            | 3  | 5억이상~<br>10억미만  | 95       | 6.66점                                       | 45             | 50             | 3                   | 2                | 40                   | 88.89         | 85.495%    | 0.23%      |
|                                                                            | 4  | 2.3억이상<br>~5억미만 | 95       | 8.57점                                       | 35             | 60             | 3                   | 2                | 30                   | 85.72         | 86.745%    | 0.09%      |
| 행자부예규<br>제39호<br><br>지역공동<br>20%이상<br><br>(타 법령<br>10%이상)<br>지역참여도<br>: 1점 | 1  | 30억이상           | 85       | 1.53점                                       | 65             | 30             | 1                   | 2                | 52                   | 80.00         | 74.995%    | 0.65%      |
|                                                                            | 2  | 10억이상~<br>30억미만 | 90       | 1.53점                                       | 65             | 30             | 1                   | 2                | 57                   | 87.70         | 79.995%    | 0.65%      |
|                                                                            | 3  | 5억이상~<br>10억미만  | 95       | 2.22점                                       | 45             | 50             | 1                   | 2                | 42                   | 93.34         | 86.495%    | 0.23%      |
|                                                                            | 4  | 2.3억이상<br>~5억미만 | 95       | 2.85점                                       | 35             | 60             | 1                   | 2                | 32                   | 91.43         | 87.245%    | 0.09%      |
| 행자부예규<br>제39호<br><br>지역공동<br>20%미만<br><br>(타 법령<br>10%미만)<br>지역참여도<br>: 0점 | 1  | 30억이상           | 85       |                                             | 65             | 30             | 0                   | 2                | 53                   | 81.54         | 75.995%    | 0.65%      |
|                                                                            | 2  | 10억이상~<br>30억미만 | 90       |                                             | 65             | 30             | 0                   | 2                | 58                   | 89.23         | 80.995%    | 0.65%      |
|                                                                            | 3  | 5억이상~<br>10억미만  | 95       |                                             | 45             | 50             | 0                   | 2                | 43                   | 95.56         | 86.995%    | 0.23%      |
|                                                                            | 4  | 2.3억이상<br>~5억미만 | 95       |                                             | 35             | 60             | 0                   | 2                | 33                   | 94.29         | 87.495%    | 0.09%      |

※ 적격환산 기술점수 = 종합평점 - (입찰점수 + 지역참여도 + 경영상태)

※ 종합평점 = PQ점수 + 입찰점수 + 지역참여도 점수 + 경영상태 점수

# 제1장 PQ 발주진행절차

---

## Pre-Qualification – 사전자격심사

1. 용역사업 추진절차
2. PQ 발주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3. 설계용역 발주 업무 흐름도

## 1

## 용역 사업 추진 절차

## 1) 용역발주 준비

.사업계획작성  
.과업내용서 작성  
.설계등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 작성등

## 2) 용역발주심의

.심의요청  
(별도의 심의조례 및 시행규정이 있을시 그에 따름)  
.심의대상 및 내용 : 용역비가 2.3억원([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3-4호](#)) 이상인 조사, 계획,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별도의 심의조례 및 시행규정이 있을시 그에 따름)  
.심의의결 (별도의 심의조례 및 시행규정이 있을시 그에 따름)

## 3) 계약방법의 결정

.일반경쟁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9조, 영제11조](#))  
.제한경쟁계약 ([법제9조, 영제20조 및 제21조, 규칙제24조 ~ 제26조](#))  
.지명경쟁계약 ([법제9조, 영제22조 및 제23조, 규칙제27조 및 제28조, 제29조](#))  
.협상에 의한 계약 ([법제9조, 영제43조 및 제44조](#))  
.수의계약 ([법제9조, 영 제25조 ~ 제31조, 규칙 제30조 ~ 제33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법제5조](#))

## 4) 용역계약심사의뢰

.(별도의 심의조례 및 시행규정이 있을시 그에 따름)

## 5) 계약심의위원회심의

.별도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등이 있을시 그에 따름.

## 6) 입찰공고

## (1) 입찰공고

.입찰공고 ([법제10조, 영제33조](#))  
- 지방계약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www.g2b.go.kr](http://www.g2b.go.kr) 활용)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음.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영제19조](#))

|                                                     |                                                                                                                                                                                                                                                                                                                                                                                                                                                                                                                                                                                                     |
|-----------------------------------------------------|-----------------------------------------------------------------------------------------------------------------------------------------------------------------------------------------------------------------------------------------------------------------------------------------------------------------------------------------------------------------------------------------------------------------------------------------------------------------------------------------------------------------------------------------------------------------------------------------------------|
|                                                     | <div data-bbox="579 286 818 329">(2) 입찰공고시기</div> <div data-bbox="564 376 1436 902"> <p>.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및 재공고시에는 5일전 (영제35조)</li> </ul> <p>.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로부터 60일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영제38조)</li> </ul> <p>.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규정에 의한 공고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입찰공고</li> <li>-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를 하는 경우 - 10일 이전에 공고</li> <li>- 입찰공고를 한 후 내용을 정정공고하는 경우 - 잔여일수에 10일 이상을 가산</li> </ul> </div> |
|                                                     | <div data-bbox="592 999 844 1039">(3) 입찰공고내용</div> <div data-bbox="564 1086 1436 1500"> <p>.입찰공고 내용 (법 제10조, 영 제36조)</p> <p>.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칙 제16조)</p> <p>.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및 건설기술의 공모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제36조, 영제52조, 영제53조, 영 제54조, 규칙제28조, 제29조)</p> <p>.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p> </div>                                                                                                                                                                                                                                                |
| <div data-bbox="165 1601 454 1644">기 현 장 설 명</div>  | <div data-bbox="564 1608 1331 1641">.입찰에 관한 서류 비치 및 교부 (영 제16조, 규칙 제39조)</div>                                                                                                                                                                                                                                                                                                                                                                                                                                                                                                                      |
| <div data-bbox="165 1765 454 1807">8) 입 찰 등 록</div> | <div data-bbox="564 1756 1335 2011"> <p>.입찰참가자격 및 자격사전심사(영제13조, 제14조, 제97조 규칙 제14조 ~ 제18조, 제23조)</p> <p>.입찰참가 통지 및 신청(규칙제37조, 제38조)</p> <p>.입찰보증금(법 제12조, 영 제37조 및 제38조, 규칙 제41조, 제43조, 제51조 ~ 제63조)</p> </di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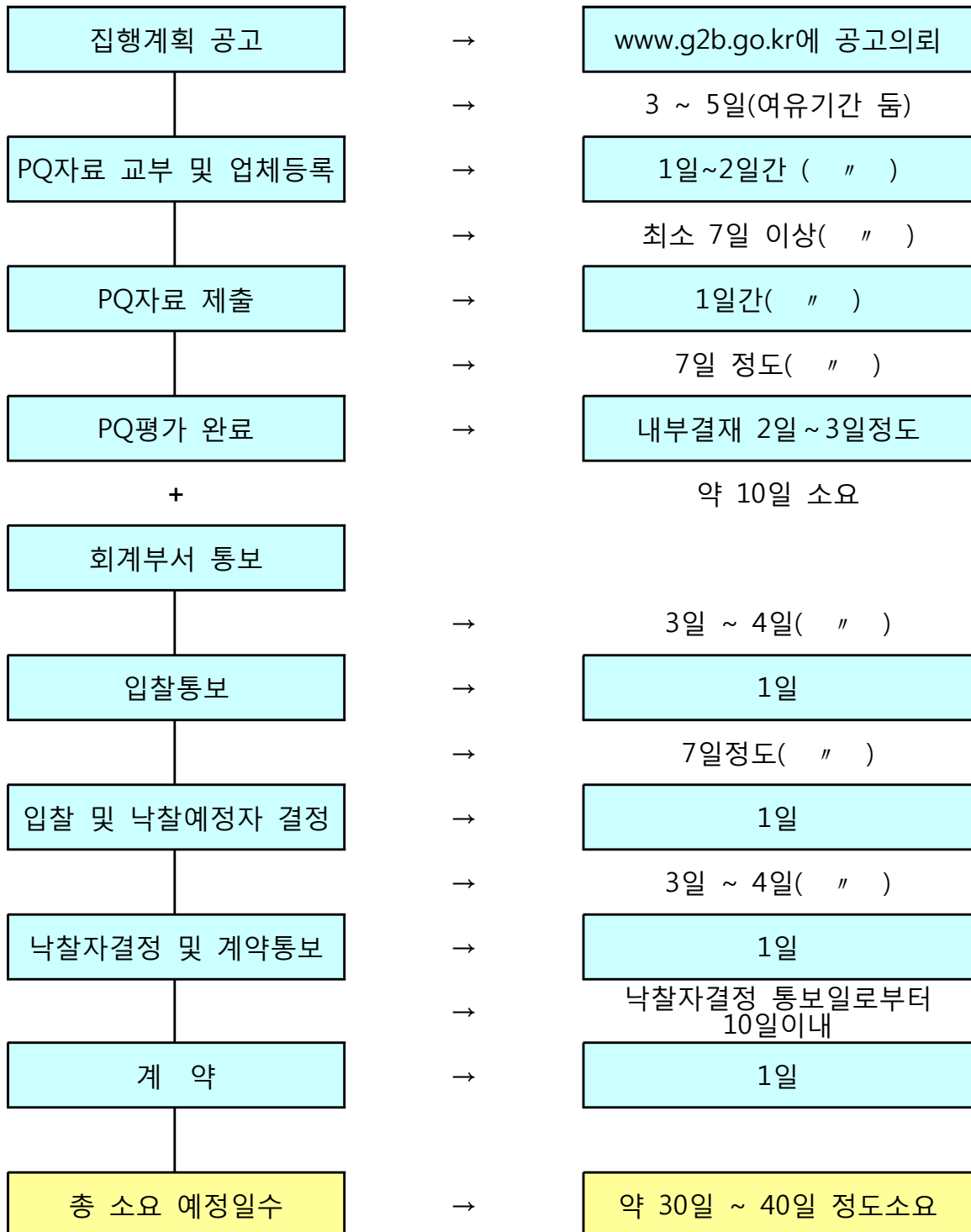
|            |                                                                                                                                                                                                                          |
|------------|--------------------------------------------------------------------------------------------------------------------------------------------------------------------------------------------------------------------------|
| 9) 입찰      | <p>.경쟁입찰의 성립 (영제12조)</p> <p>.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 무효 (영제39조 및 제85조, 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p> <p>.2단계 경쟁입찰 (기술, 가격입찰) (영제18조)</p> <p>.입찰참가,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p> <p>(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 제9조)</p>                              |
| 10) 평가     | <p>.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영제51조, 제52조, 규칙제28조, 제29조)</p> <p>.기술·가격 분리입찰 (건설기술진흥법 규칙제30조)</p>                                                                                                                       |
| 11) 개찰     | <p>.개찰 및 낙찰선언 (영제40조, 규칙제46조)</p> <p>-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 기술입찰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인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봉</p> |
| 12) 낙찰자 결정 | <p>.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법제13조, 영제42조)</p> <p>.협상 및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영제43조, 제48조)</p> <p>.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제99조)</p> <p>.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제100조)</p> <p>.공모 및 TP에 따른 설계비 보상 (영제101조)</p>                                   |
| 13) 계약     | <p>.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법제14조, 영제49조, 제50조, 규칙제47조, 제48조)</p> <p>.계약보증금 (법제15조, 영제51조 ~ 제54조, 규칙제49조)</p> <p>.이행보증 (영제51조, 규칙제64조)</p> <p>.손해보험의 가입 (영제55조)</p>                                                            |

|               |                                                                                                                                                                                                                                                                                 |
|---------------|---------------------------------------------------------------------------------------------------------------------------------------------------------------------------------------------------------------------------------------------------------------------------------|
| 14) 용역착수및감독   | <p>.감독관 및 감독<br/>(법제16조, 영제56조, 규칙제65조 ~ 제67조)</p> <p>.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br/>(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V-1)</p> <p>.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및 비밀엄수 업무<br/>(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V-2 및 IX-2)</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br/>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br/>(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p> <p>.지체상금 (영제90조, 규칙제75조)</p> |
| 15) 설 계 심 의   | <p>.심의요청<br/>(지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p> <p>.심의내용<br/>-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br/>-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br/>-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적용 및 공사시방<br/>내용의 적정성 등<br/>-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br/>(지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p> <p>.심의.의결 (지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p>                |
| 16) 성 과 품 제 출 | <p>.설계도서의 작성<br/>(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칙 제41조~ 제43조)</p> <p>.설계 등의 표준화<br/>(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 영제64조)</p>                                                                                                                                                                                  |
| 17) 검 사       | <p>.검사<br/>- 계약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완료<br/>(법제17조, 영제64조, 제65조, 규칙 제65 ~ 제67조)</p> <p>.감독과 검사직무 겸직 금지 (영제56조)</p>                                                                                                                                                            |
| 18) 인 수       | <p>.검사(확인) 후 즉시 인수<br/>(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VIII)</p>                                                                                                                                                                                                                                 |
| 19) 대 가 지 급   | <p>.대가의 지급<br/>-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br/>(법제18조, 영제67조)</p>                                                                                                                                                                                                                    |

※ 주) 위 표의 법, 령 및 규칙은 지방계약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임.

## 2

# PQ (Pre-Qualification : 사전 자격 심사) 발주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 3 설계용역 발주 업무 흐름도

|           |                                                                                                                                                                            |                                                                                                                                                                                                                                                                                                                  |
|-----------|----------------------------------------------------------------------------------------------------------------------------------------------------------------------------|------------------------------------------------------------------------------------------------------------------------------------------------------------------------------------------------------------------------------------------------------------------------------------------------------------------|
| 20**.**.* | <b>예비타당성조사</b><br>예비타당성조사운영지침(기획예산처)                                                                                                                                       | 총사업비500억원이상(국고지원300억원상)<br><기획예산처,KDI(연구총괄기관)>                                                                                                                                                                                                                                                                   |
| 20**.**.* | <b>지방재정투융자심사</b><br>지자체 재정투융자심사규칙<br>지방재정법 제37조                                                                                                                            | 대상 : 총사업비300억원상(중앙),50~300억(시),50억미만(구)<br>※총사업비 500억원상은 투융자심사 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
| 20**.**.* | <b>입찰방법심의</b><br>총공사비 추정가격300억원상<br>신규복합공정공사<br>총공사비 300억미만공사중 일괄.대안입찰로<br>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공사<br>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br>지방계약법 시행령 96조, 시행규칙78,79조<br>※ 다만 계획서에 기타공사로 요청된 경우 심의생략 | <예산담당관실,안행부><br>지방재정투융자심사후(사업시행방침결정후 예산편성전)<br>기본설계서작성전(대안입찰의경우 실시설계완료후)<br>심의완료 후 G2B에 공고<br>※입찰안내서심의<br>- 입찰방법심의시 일괄.대안입찰로 결정된공사<br>- 조달청 입찰의뢰전 심의 또는 실시설계완료단계                                                                                                                                                 |
| 20**.**.* | <b>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b><br>지자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br>지자체 용역업무관리지침                                                                                                                 | <지자체 해당○○과><br>대상 : 학술, 종합기술, ※공사설계용역 제외<br>용역발주전 (1월,7월수요조사)<br>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형편에맞게 시기조정<br>발주부서사전검토→심사회의→발주방침→심사요구                                                                                                                                                                                                |
| 20**.**.* | <b>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작성</b>                                                                                                                                                       | <정책기획관실><br>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br>각종영향평가, 사전환경,재해영향검토, 공디자인심의용역비반영<br>※ 용지측량비용 별도산출(대한자적공사 측량수수료)                                                                                                                                                                                                  |
| 20**.**.* | <b>발주방침결정</b>                                                                                                                                                              | <내부검토><br>용역비 및 예산현황, 차수별 용역 발주계획등                                                                                                                                                                                                                                                                               |
| 20**.**.* | <b>계약심사 및 일상감사</b>                                                                                                                                                         | <발주부서><br>지자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br>공사 : 5억이상, 설계 및 감리용역 : 2억이상<br>지자체 일상감사규정에따름(지행부서)<br>공사 : 5억이상, 설계 및 감리용역 : 1억이상                                                                                                                                                                                                    |
| 20**.**.* | <b>시행계획보고</b>                                                                                                                                                              | <발주부서, 계약부서><br>입찰자격기준, PQ심사평가기준 검토                                                                                                                                                                                                                                                                              |
| 20**.**.* | <b>입찰의뢰 및 공고</b><br>(발주부서→계약부서)                                                                                                                                            | <발주부서, 계약부서><br>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 :건기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48,49<br>PQ평가자료제출 안내공고내용 : 건기법 시행규칙 24조<br>3.8억이상은 국제입찰, 20억상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br>e-호조 예산집행계획등록(자금관리)<br>평가안내서 작성 또는 의뢰(발주부서→○○과)<br>평가안내서 심의(평가위원 4명, 발주부서과장 1명)<br>평가안내서 결정및통보(○○과→발주부서)<br>교부(참가)업체현황 보고, 평가부서통보(○○과)<br>평가안내서 질의답변 또는 정정사항 시정공고<br>참여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
| 20**.**.* | <b>참가업체 등록 및 안내서 교부</b>                                                                                                                                                    | <발주부서><br>등록업체현황 보고<br>평가자료 평가 또는 의뢰(○○과)<br>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br>(http://www.kiscon.net) 부실별점등 조회                                                                                                                                                                                                       |
| 20**.**.* | <b>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서류평가</b>                                                                                                                                                 | <발주부서><br>평가근거 : 설계등용역업자및건축사법에 따른사업수행능력<br>세부평가기준 (국토부고시제2010-15호)                                                                                                                                                                                                                                               |
| 20**.**.* | <b>평가결과보고 및 입찰 참가 대상업체 통보</b><br>(발주,평가부서→계약부서)                                                                                                                            | <발주부서><br>10억이상:수행능력65점,지역참여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br>10억이하:수행능력45점,지역참여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                                                                                                                                                                                                                             |
| 20**.**.* | <b>입찰</b><br>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br>(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                                                                                                              | <해당○○과, 계약부서><br>※여건변화에 따라 단계별 절차와 소요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 20**.**.* | <b>계약체결</b>                                                                                                                                                                |                                                                                                                                                                                                                                                                                                                  |

## 제2장 PQ 발주 관련법규

---

1. 공고 및 발주관련 관계법령
2. 업체참가자격 관련 관계법령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4.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직무분야, 전문분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관련]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시설물인 1종2종시설물
7.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금액별 PQ, SOQ, TP 분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 (2015년 12월 28일)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금액별 PQ, SOQ, TP 분류

(금액 : VAT 별도)

| 금 액              | 기본계획<br>기본설계    | 건축설계<br>(건축서비스진<br>흥법) | 실시설계            | 건설<br>사업관리                             | 정밀점검<br>안전진단    |
|------------------|-----------------|------------------------|-----------------|----------------------------------------|-----------------|
| 1억이상             |                 | 일반입찰<br>또는 PQ          |                 |                                        | PQ<br>(별표4제1호)  |
| 2억이상             |                 |                        |                 |                                        | SOQ<br>(별표4제2호) |
| 2.3억이상~<br>10억미만 | PQ<br>(별표2제1호)  | PQ 또는<br>현상설계          | PQ<br>(별표2제1호)  | PQ<br>(별표3제1호)                         |                 |
| 10억이상~<br>15억미만  | SOQ<br>(별표2제2호) | //                     |                 |                                        |                 |
| 15억이상~<br>25억미만  |                 |                        | SOQ<br>(별표2제2호) |                                        |                 |
| 15억이상            | TP<br>(별표2제3호)  | //                     |                 |                                        |                 |
| 25억이상            |                 |                        | TP<br>(별표2제3호)  |                                        |                 |
| 20억이상            | -               |                        |                 | TP<br>(별표3제2호)<br><br>시공단계<br>(별표3제3호) |                 |

## 2

## 공 고 및 발 주 관 련 관 계 법 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 - 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기획재정부장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2억원

## **건설기술진흥법**

###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 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

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전자격심사(PQ)

-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 기술자평가서(SQ) 및 기술제안서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 3

## 업체 참가 자격 관련 관계 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표 참고(별표 1)

## 건축사법

###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삭제 <2000.1.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44조(측량업의 등록)**

-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측량업의 종류)**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측량업</li> <li>2. 일반측량업</li> <li>3. 연안조사측량업</li> <li>4. 항공촬영업</li> <li>5. 공간영상도화업</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영상처리업</li> <li>7. 수치지도제작업</li> <li>8. 지도제작업</li> <li>9. 지하시설물측량업</li> </ol> |
|----------------------------------------------------------------------------------------------------------------------------------------|-----------------------------------------------------------------------------------------------------------------------|
-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 <개정 2014.1.1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 종 류       | 업 무 내 용                                                                                                                                         |
|-----------|-------------------------------------------------------------------------------------------------------------------------------------------------|
| 측 지 측 량 업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br>○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공 공 측 량 업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br>○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일 반 측 량 업 |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br>○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br>○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br>○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 연안조사측량업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br>○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 항 공 촬 영 업 |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공간영상도화업   |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
| 영 상 처 리 업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 수치지도제작업   |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 지 도 제 작 업 |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br>○지적편집도 제작                                                      |
| 지하시설물측량업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지적측량업     |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br>○「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br>○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br>○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 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1.1.17>

####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 종류    |    | 등록 기준                              |         | 영업 범위            |
|-------|----|------------------------------------|---------|------------------|
|       |    | 기술인력                               | 자본금     |                  |
| 종합설계업 |    | 전기 분야 기술사 2명<br>설계사 2명<br>설계보조자 2명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 전문설계업 | 1종 | 전기 분야 기술사 1명<br>설계사 1명<br>설계보조자 1명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       | 2종 | 설계사 1명<br>설계보조자 1명                 | 1천만원 이상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 전력관련 건축법

#### 제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전기설비기술자)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전력관련 건축법 시행령

####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5.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 기술사법

###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개정 2013.3.23> 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 **자연재해대책법**

###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3.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4.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 ②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4

##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조 별표1 관련

1. 2011년 5월 1일 이후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
| 선박부문    | 조선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금속부문    | 금속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
| 화학부문    | 화공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br>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br>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br>13) 품질시험 |
| 설비부문    | 설비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br>5) 자연·토양환경                                                                    |
| 농림부문    | 1) 농림 2) 시설원예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 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br>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br>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
|----------------------------------------|-----------|
|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 일반산업기계    |
| 차량, 철도차량                               | 차량        |
|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 조선        |
| 항공기계, 항공기관                             | 항공        |
|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가공, 표면처리            | 금속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 전기설비      |
|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 제어, 전자계산기       | 전기전자응용    |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정보관리      |
|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세라믹, 화학공장 설계, 화학장치설비      | 화공        |
| 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 섬유        |
|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 자원관리      |
| 토목구조, 건축구조                             | 구조        |
|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 토질·지질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량·지적     |
|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 품질시험      |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설비        |
| 식품, 농화학, 축산, 종자, 산림, 임산가공              | 농림        |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 해양        |
| 공장관리, 품질관리                             | 생산관리      |
| 포장, 제품디자인                              | 포장·제품디자인  |
|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 안전,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 산업안전      |
| 소방설비                                   | 소방·방재     |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 원자력·방사선관리 |

## 5

##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1) 경력: 40점 이내
- 2) 학력: 20점 이내
-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br>2) 건설기계<br>3) 용 접<br>4) 승강기<br>5) 일반기계                  |
| 나. 전기·전자 | 1) 철도신호<br>2) 건축전기설비<br>3) 산업계측제어                                       |
| 다. 토목    | 1) 토질·지질<br>2) 토목구조<br>3) 항만 및 해안<br>4) 도로 및 공항<br>5) 철도·삭도<br>6) 수자원개발 |

|          |                                       |                                    |
|----------|---------------------------------------|------------------------------------|
|          | 7) 상하수도<br>9) 토목시공<br>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8) 농어업토목<br>10) 토목품질관리<br>12) 지적   |
| 라. 건축    | 1) 건축구조<br>3) 건축시공<br>5) 건축품질관리       | 2) 건축기계설비<br>4) 실내건축<br>6) 건축계획·설계 |
|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 2) 광산보안                            |
| 바. 도시·교통 | 1) 도시계획                               | 2) 교통                              |
| 사. 조경    | 1) 조경계획                               | 2) 조경시공관리                          |
|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br>3) 가스                      | 2) 소방<br>4) 비파괴검사                  |
| 자. 환경    | 1) 대기관리<br>3) 소음진동<br>5) 자연·토양환경      | 2) 수질관리<br>4) 폐기물처리<br>6) 해양       |
|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재무<br>3) 건설마케팅                | 2) 건설기획<br>4) 건설정보처리               |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       |     |    |      |        |
|----|-------|-----|----|------|--------|
| 제정 | 2005. | 8.  | 5  | 고시 제 | 248 호  |
| 개정 | 2007. | 2.  | 26 | 고시 제 | 68 호   |
| 개정 | 2008. | 2.  | 27 | 고시 제 | 93 호   |
| 개정 | 2008. | 4.  | 16 | 고시 제 | 46 호   |
| 개정 | 2009. | 8.  | 21 | 고시 제 | 754 호  |
| 개정 | 2010. | 2.  | 3  | 고시 제 | 56 호   |
| 개정 | 2010. | 9.  | 1  | 고시 제 | 602 호  |
| 개정 | 2010. | 12. | 30 | 고시 제 | 1018 호 |
| 개정 | 2012. | 12. | 5  | 고시 제 | 848 호  |
| 개정 | 2013. | 4.  | 22 | 고시 제 | 147 호  |
| 개정 | 2013. | 6.  | 28 | 고시 제 | 384 호  |
| 개정 | 2014. | 5.  | 22 | 고시 제 | 288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가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 제2장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협의회 및 경력관리위원회

**제3조(경력관리기관 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건의 할 수 있다.

1. 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3. 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력관리업무를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간사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기술인력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각 수탁기관의 경력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 제3장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제5조(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6조(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5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7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부표 2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4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 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군경력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 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 확인서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⑧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건설기술자가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10조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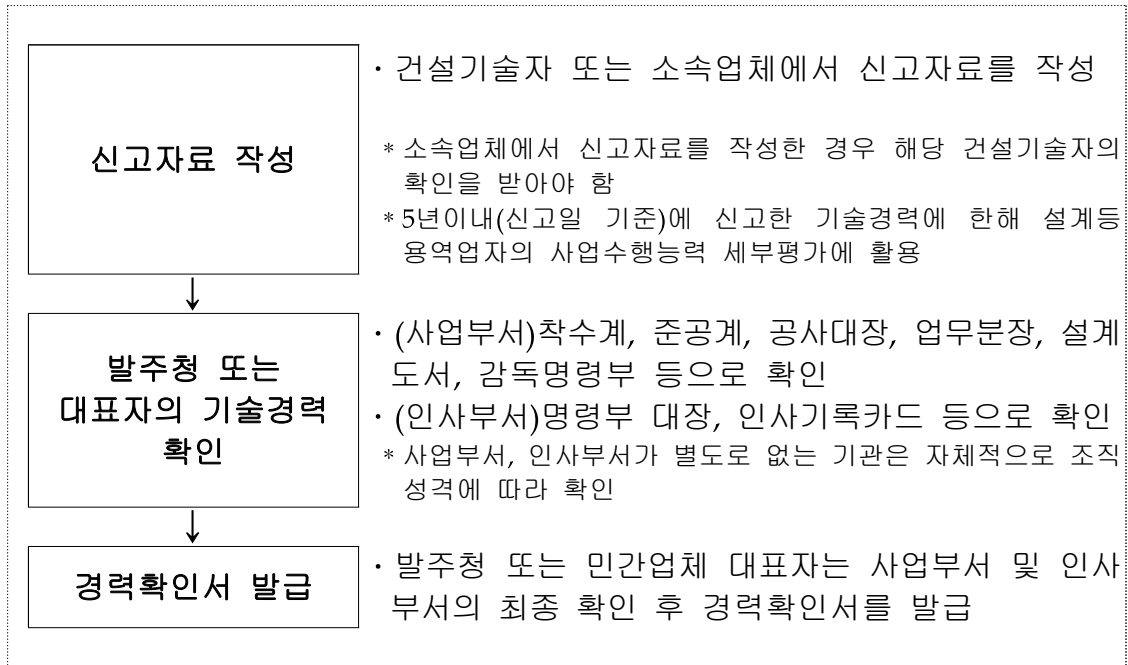
⑪ 건설기술자가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lt;경력확인서 발급 절차&gt;



**제11조(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자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제12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1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 3 제3호 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 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③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신고 자료(제9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3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제5장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제15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한 경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8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② 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일수와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이하 “임의경력”이라 한다)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경력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일수 및 비건설 경력증명서에 따른다.

**제20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제21조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 부 칙(개정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 통합 및 등급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는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    | 일반기계           |
|        | 공조냉동기계<br>건축기계설비           |       | 공조냉동 및 설비      |
| 금속     | 비파괴검사                      | 안전관리  | 비파괴검사          |
| 전기     | 철도신호<br>전기철도               | 전기·전자 | 철도신호           |
|        | 건축전기설비                     |       | 건축전기설비         |
| 전자     | 산업계측제어                     |       | 산업계측제어         |
| 토목     | 토질 및 기초<br>지질 및 지반<br>응용지질 | 토목    | 토질·지질          |
|        | 철도<br>철도보선                 |       | 철도·삭도          |
|        | 토목품질시험<br>콘트리트             |       | 토목품질관리         |
| 건축     | 건축품질시험                     | 건축    | 건축품질관리         |
|        | 건축설계                       |       | 건축계획·설계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광업    | 화약류관리          |
|        | 광산보안                       |       | 광산보안           |
|        | 지하수                        | 토목    | 수자원개발          |
| 국토개발   | 도시계획                       | 도시·교통 | 도시계획           |
| 교통     | 교통                         |       | 교통             |
| 국토개발   | 조경                         | 조경    | 조경계획<br>조경시공관리 |
| 국토개발   | 지적                         | 토목    | 지적             |
| 환경     | 토양환경<br>자연환경관리             | 환경    | 자연·토양환경        |
| 산업응용   | 공장관리<br>품질관리               | 건설지원  | 건설마케팅          |
|        | 승강기                        | 기계    | 승강기            |
| 화공및세라믹 | 화공                         | 건설지원  | 건설마케팅          |
| 섬유     | 섬유                         |       |                |
| 해양     | 해양                         | 환경    | 해양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된 직무 및 전문분야(제1항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말한다)의 등급은 다음표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산정한 등급이 종전 분야의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표 산정방법 기등급 인정분야 중 최상위 등급을 인정한다.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산정방법                                                                                                                                                                                                   |
|------|-----------|--------------------------------------------------------------------------------------------------------------------------------------------------------------------------------------------------------|
| 기계   | 일반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컴퓨터응용가공분야 경력과 일반기계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컴퓨터응용가공 또는 일반기계</li> </ul>                                                                        |
|      | 공조냉동 및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경력과 건축기계설비분야 경력 (기계분야를 말한다)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축기계설비(기계분야)</li> </ul>                                                    |
|      | 승강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의 승강기분야 경력과 기계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승강기 또는 기계</li> <li>- (전문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의 승강기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승강기</li> </ul> |
| 안전관리 | 비파괴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금속분야 경력과 안전관리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금속 또는 안전관리</li> <li>- (전문분야) 종전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비파괴검사</li> </ul>     |
| 전기전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전기분야 경력과 전자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전기 또는 전자</li> </ul>                                                                                   |
|      | 철도신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종전 전기분야의 철도신호분야 경력과 전기철도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철도신호 또는 전기철도</li> </ul>                                                                     |
|      | 건축전기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종전 전기분야의 건축전기설비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건축전기설비</li> </ul>                                                                                   |
|      | 산업계측제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종전 전자분야의 산업계측제어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산업계측제어</li> </ul>                                                                                   |
| 토목   | 토질 ㉔ 지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지질 및 기반분야와 응용지질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또는 응용지질</li> </ul>                                                       |
|      | 철도 ㉔ 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철도분야 경력과 철도보선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철도분야 또는 철도보선</li> </ul>                                                                                  |
|      | 토목품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토목품질시험분야 경력과 콘크리트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토목품질시험 또는 콘크리트</li> </ul>                                                                          |
|      | 수자원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분야와 토목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지하수 또는 토목</li> <li>- (전문분야) 종전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지하수</li> </ul>    |
|      | 지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지적분야 경력과 토목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등급 인정분야) 지적 또는 토목</li> <li>- (전문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지적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지적</li> </ul>                                                                                                                                                        |
| 건축   | 건축품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건축품질시험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건축품질시험</li> </ul>                                                                                                                                                                                          |
|      | 건축계획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종전 건축분야의 건축설계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건축설계</li> </ul>                                                                                                                                                                                     |
| 광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광업자원분야 경력 중 지하수분야를 제외한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광업자원</li> </ul>                                                                                                                                                                           |
| 도시교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도시계획분야 경력과 교통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도시계획 또는 교통</li> </ul>                                                                                                                                                                     |
| 조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국토개발분야의 조경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조경</li> </ul>                                                                                                                                                                                       |
| 환경   | 자연토양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토양환경분야 경력과 자연환경관리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토양환경 또는 자연환경관리</li> </ul>                                                                                                                                                                        |
| 건설지원 | 건설마케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 중 승강기를 제외한 경력, 화공 및 세라믹분야 경력과 섬유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공장관리, 품질관리, 화공 및 세라믹 또는 섬유</li> <li>- (전문분야) 종전 산업응용분야의 공장관리분야 경력, 품질관리분야 경력, 화공 및 세라믹분야의 화공분야 경력과 섬유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공장관리, 품질관리, 화공 또는 섬유</li> </ul> |
| 환경   | 해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종전 해양분야 경력과 환경분야 경력을 합산한다.</li> <li>- (기등급 인정분야) 해양, 환경</li> </ul>                                                                                                                                                                                   |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의 직무분야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또는 졸업하거나 이수하여 신고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는 부칙 제2조를 준용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4호에 의한 직무분야로 본다.

**제4조(보일러산업기사 신고자의 직무분야 인정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이를 신고한 후 직무분야 기계를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기계로 인정한다.

**제5조(해외경력 보정계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해외경력에 대하여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6)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과로 본다. 다만, 종전 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따라 인정받은 석·박사 과정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중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2)의 가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력자 신고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자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다음표와 같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 항목 | 산식 또는 주기                                                                                                                                                    | 배점   |
|----|-------------------------------------------------------------------------------------------------------------------------------------------------------------|------|
| 경력 | $(\log N / \log 40) \times 100 \times 0.4$ <p>*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p> | 0~40 |
| 자격 | -                                                                                                                                                           | 10   |
| 학력 | -                                                                                                                                                           | 10   |
| 교육 | 35시간마다                                                                                                                                                      | 1    |

**제8조(지적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측량 및 지적경력 인정규정에 대하여는 기술정책과-531(2011.2.8)에 따라 지적분야는 지적관련 자격종목(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 취득이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교육지수 적용례)** 제7조 별표 3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이수한 교육훈련부터 적용한다.

## [五五 1]

국가자격 종목(제5조제1항 관련)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종류 등<br/>직분</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기술사 또는 건축사</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기능장</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기 사</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산업기사</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기능사</div>                                                                                                                                                                                                                                                                                                                                                                                                       |
|-----------------------------------------------------------|----------------------------------------------------------------------------------------------------------------------------------------------------------------------------------------------------------------------------------------------------------------------|----------------------------------------------------------------------------------------------------------------------------------------------------------------------------------------------------------------------------------------------------------------------------------------|-----------------------------------------------------------------------------------------------------------------------------------------------------------------------------------------------------------------------------------------------------------------------------------------------------------------------|----------------------------------------------------------------------------------------------------------------------------------------------------------------------------------------------------------------------------------------------------------------------------------------------------------------------------|---------------------------------------------------------------------------------------------------------------------------------------------------------------------------------------------------------------------------------------------------------------------------------------------------------------------------------------------------------------------------------------------------------------------------------------------------------|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기계</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loat: left;">기계</div> <div style="clear: both;"></div> 공조냉동기계<br>건설기계<br><div style="text-align: center;">용 접</div><br><br>건축기계설비<br>산업기계설비<br><br><div style="text-align: right;"><div style="float: left;">금 형</div></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loat: left;">기능장</div> <div style="clear: both;"></div> 기계가공<br><br><br><div style="text-align: center;">용 접</div><br><br>배 관<br>판금제관<br>건설기계정비<br>*기계정비<br><br><br><div style="text-align: right;"><div style="float: left;">금형제작</div></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loat: left;">기 사</div> <div style="clear: both;"></div> 일반기계<br>공조냉동기계<br>건설기계설비<br><div style="text-align: center;">용 접</div><br>기계설계<br>건축설비<br>설비보전<br><br><br>건설기계정비<br><br><div style="text-align: center;">승 강 기</div><br><br><br><div style="color: red;">메카트로닉스</div>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loat: left;">산업기사</div> <div style="clear: both;"></div> 컴퓨터응용가공<br><br>공조냉동기계<br>건설기계설비<br><div style="text-align: center;">용 접</div><br>기계설계<br>건축설비<br><br><br>배 관<br>판금제관<br>건설기계정비<br>기계정비<br><div style="text-align: center;">승 강 기</div><br><br>정밀측정<br>생산자동화<br><br>기계가공조립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loat: left;">기능사</div> <div style="clear: both;"></div> 컴퓨터응용선반<br>컴퓨터응용밀링<br>공조냉동기계<br><div style="text-align: center;">용 접</div><br>전산응용기계제도<br><br><br>배 관<br>판금제관<br>건설기계정비<br>기계정비<br><div style="text-align: center;">승 강 기</div><br>연 삭<br>정밀측정<br>생산자동화<br>금 형<br>기계가공조립<br>굴삭기운전<br>기중기운전<br>로더운전<br>롤러운전<br>모터그레이더운전<br>불도저운전<br>아스팔트파쇄운전<br>지게차운전<br>천장크레인운전<br>특수용접<br>*공기업축기운전<br>*쇄석기운전<br>*준설탁운전 |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전기전자</div>        | 철도신호<br>건축전기설비<br>전기철도<br><br>산업계측제어<br><br><div style="color: red;">발송배전</div>                                                                                                                                                                                      | 전 기<br><br><br>전자기기                                                                                                                                                                                                                                                                    | 철도신호<br>전 기<br>전기철도<br>전기공사<br>*공업계측제어                                                                                                                                                                                                                                                                                | 철도신호<br>전 기<br>전기철도<br>전기공사<br>*공업계측제어                                                                                                                                                                                                                                                                                     | 전 기<br><br><br>*공업계측제어<br>전자기기                                                                                                                                                                                                                                                                                                                                                                                                                          |
|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토목</div>          | 토질및 기초지질및 지반토목구조<br>항만및 해안도로및 공항철 도<br>수자원 개발상하수도<br>농어업토목 토목시공<br>토목품질시험                                                                                                                                                                                            |                                                                                                                                                                                                                                                                                        | 응 용 지 질<br><br><br><br><br><br><br>철 도 토 목<br><br><br><br><br><br>토 목<br>건 설 재 료 시 험                                                                                                                                                                                                                                  | <br><br><br><br><br><br><br>철 도 토 목<br><br><br><br><br><br>토 목<br>건 설 재 료 시 험                                                                                                                                                                                                                                              | <br><br><br><br><br><br><br>전 산 응 용 토 목 제 도<br><br><br><br>철 도 토 목<br><br><br><br>석 공<br>건 설 재 료 시 험                                                                                                                                                                                                                                                                                                                                                    |

|            |                                                                                     |                                    |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br>지 적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br>콘크리트<br>지 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br>항공사진<br>지도제작<br>*도화<br>콘크리트<br>지 적                                                 | 측 량<br>항공사진<br>지도제작<br>도화<br>콘크리트<br>지 적                                                                                        |
| 건 축        | 건축구조<br>건축기계설비<br><br>건축시공<br>건축품질시험<br><br>건축사                                     | 건축일반시공<br><br><br>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br>건 축<br>실내건축                                                                                       | 건축설비<br>건 축<br>실내건축<br>건축일반시공<br>*건축제도<br><br>방 수<br>건축목공<br>온수온돌                               | 거푸집<br>건축도장<br>도 배<br>실내건축<br>미 장<br>전산응용건축제도<br><br>비 계<br>방 수<br>건축목공<br>조 적<br>온수온돌<br>유리시공<br>철 근<br>타 일<br>금속재창호<br>플라스틱창호 |
| 광업         | 화약류관리                                                                               |                                    | 화약류관리<br>광산보안                                                                                             | 화약류관리<br>광산보안                                                                                   | 화약취급<br>시 추                                                                                                                     |
| 도시·<br>교통  | 도시계획<br>교 통                                                                         |                                    | 도시계획<br>교 통                                                                                               | 교 통                                                                                             |                                                                                                                                 |
| 조 경        | 조 경                                                                                 |                                    | 조 경                                                                                                       | 조 경                                                                                             | 조 경                                                                                                                             |
| 안 전<br>관 리 | 건설안전<br><br>소 방<br><br>가 스<br>기계안전<br>화공안전<br>전기안전<br>산업위생관리<br>비파괴검사 관련 종목<br>금속재료 | 가 스<br><br><br><br>금속재료<br><br>위험물 | 건설안전<br>산업안전<br>소방설비(기계분야)<br>소방설비(전기분야)<br>가 스<br><br>산업위생관리<br>비파괴검사 관련 종목<br>금속재료                      | 건설안전<br>산업안전<br>소방설비(기계분야)<br>소방설비(전기분야)<br>가 스<br><br>산업위생관리<br>비파괴검사 관련 종목<br>금속재료<br><br>위험물 | 가 스<br><br><br><br>금속재료시험<br>축 로<br>위험물                                                                                         |
| 환 경        | 대기관리<br>수질관리<br>소음진동<br>폐기물처리<br>토양환경<br>자연환경관리<br>해 양                              |                                    | 대기환경<br>수질환경<br>소음진동<br>폐기물처리<br>토양환경<br>자연생태복원<br>생물분류(동물)<br>생물분류(식물)<br>해양환경<br>해양자원개발<br>해양공학<br>항로표지 | 대기환경<br>수질환경<br>소음진동<br>폐기물처리<br><br>자연생태복원<br><br>항로표지<br>잠 수<br>해양조사                          | 항로표지<br>잠 수                                                                                                                     |

|                                     |                            |       |                        |                             |                            |
|-------------------------------------|----------------------------|-------|------------------------|-----------------------------|----------------------------|
| 건설<br>지원                            | 정보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자메신지조직응용              | 사무자동화                       |                            |
|                                     | 정보통신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br>정보기기운용             |
|                                     | 화 공<br>섬 유<br>공장관리<br>품질관리 | 통신설비  | 정보보안<br>전파전자통신<br>정보통신 | 정보보안<br>전파전자통신<br>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br><br>통신기기<br>통신선로 |
|                                     |                            |       | 화 공<br>섬 유<br>품질경영     | 통신선로<br>*화 공<br>섬 유<br>품질경영 |                            |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       |                        |                             |                            |

##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 폐지 종목                                    | 폐지일        |
|------------------------------------------|------------|
|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 1992.03.01 |
|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 2004.12.31 |
|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쇠석기운전기능사<br>준설선운전기능사 | 2010.12.13 |

2. 1993. 3. 27 이전 취득한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별표 3 제2호 가목의 자격지수를 말한다) 배점은 10점으로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및 별표 3에 따른다.
4.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한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별 표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 직무분야  | 학 과                                                                                                                                                                                                                                           |
|-------|-----------------------------------------------------------------------------------------------------------------------------------------------------------------------------------------------------------------------------------------------|
|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
| 전기전자  |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
| 토 목   |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b>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b> ,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b>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b>                                                                           |
| 건 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 광 업   |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 도시교통  |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 조 경   |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
| 안전 관리 |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
| 환 경   |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b>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b>                                                                                                                                                                                |
| 건설지원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

## 비 고

-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이하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한다.** (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7조 관련)**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 구분<br>기술<br>등급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br>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품질관리업무를<br>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업무를<br>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 고 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br>~ 6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br>~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br>~ 70점 이상 |
| 중 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br>~ 55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br>~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br>~ 60점 이상 |
| 초 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br>~ 35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br>~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br>~ 40점 이상 |

**비 고**

-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text{역량지수} = \text{자격지수}(40\text{점 이내}) + \text{학력지수}(20\text{점 이내}) + \text{경력지수}(40\text{점 이내}) + \text{교육지수}(3\text{점 이내})$$
-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 비 이공계열 학과                                                                           | 비 이공계열 자격                              |
|-------------------------------------------------------------------------------------|----------------------------------------|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br>관세사, 행정사 |

-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 자격종목      | 배 점 |
|-----------|-----|
| 기술사 / 건축사 | 40  |
| 기 사 / 기능장 | 30  |
| 산업기사      | 20  |
| 기능사       | 15  |
| 기 타       | 10  |

### 비 고

-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 학력사항                | 배 점 |
|---------------------|-----|
| 학사 이상               | 20  |
| 전문학사(3년제)           | 19  |
| 전문학사(2년제)           | 18  |
| 고 졸                 | 15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 고졸 미만               | 10  |

#### 비 고

-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함한다.
  -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 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 산 식                                                                                                                                                         | 배 점    |
|-------------------------------------------------------------------------------------------------------------------------------------------------------------|--------|
| $(\log N / \log 40) \times 100 \times 0.4$ <p>*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p> | 0 ~ 40 |

### 비 고

-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책임<br>정도       | 현장<br>대리인         | 안전·<br>환경<br>관리자<br>·<br>공사감독 | 품질<br>관리자<br>(선임) | 품질<br>관리<br>(비선임) | 사업책임<br>기술자       | 분야별<br>책임<br>기술자<br>·<br>용역감독 | 참여<br>기술자<br>일반감독 | 책임건설<br>사업관리<br>기술자 | 상주<br>기술자         | 기술<br>지원<br>기술자  |
|----------------|-------------------|-------------------------------|-------------------|-------------------|-------------------|-------------------------------|-------------------|---------------------|-------------------|------------------|
| 일반<br>경력 참여일   | 1.3               | 1.1                           | 1.1               | 1.0               | 1.3               | 1.1                           | 1.0               | 1.3                 | 1.1               | 1.0              |
| 품질<br>경력 참여일   | 1.04<br>(1.3×0.8) | 0.88<br>(1.1×0.8)             | 1.1               | 1.0               | 1.04<br>(1.3×0.8) | 0.88<br>(1.1×0.8)             | 0.8<br>(1.0×0.8)  | 1.04<br>(1.3×0.8)   | 0.88<br>(1.1×0.8) | 0.8<br>(1.0×0.8) |
| 건설사업<br>관리 참여일 | 1.04<br>(1.3×0.8) | 0.88<br>(1.1×0.8)             | 0.88<br>(1.1×0.8) | 0.8<br>(1.0×0.8)  | 1.04<br>(1.3×0.8) | 0.88<br>(1.1×0.8)             | 0.8<br>(1.0×0.8)  | 1.3                 | 1.1               | 1.0              |

-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 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라. 교육지수(3점 이내)

| 교육기간    | 배 점 |
|---------|-----|
| 35시간 마다 | 1   |

#### 비 고

-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 대<br>분<br>류           | 건설공사업무      | 정 의                                                                                                                         |
|-----------------------|-------------|-----------------------------------------------------------------------------------------------------------------------------|
| 기<br>획                | 1. 계획및조사    |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
|                       | 2. 측량및지적    |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br>※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
|                       | 3. 감정및평가    |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
| 설<br>계<br>·<br>견<br>적 | 4. 설계       |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
|                       | 5. 견적       |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
| 시<br>공<br>관<br>리      | 6. 시공       |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
|                       | 7. 품질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
|                       | 8.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
|                       | 9. 환경관리     |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
|                       | 10. 화약관리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
| 유<br>지                | 11. 안전진단및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

|                       |                                  |                                                                                                                                                                                                                                                       |
|-----------------------|----------------------------------|-------------------------------------------------------------------------------------------------------------------------------------------------------------------------------------------------------------------------------------------------------|
| 관<br>리                | 12. 유지보수및보강                      |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
|                       | 13. 건설사업관리<br>(설계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중전 설계감리)                                                                                                                                                                                              |
| 관<br>리<br>·<br>감<br>독 | 14. 감리(건축법)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 15. 감리(주택법)                      |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 <p>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p> <p>작성예)<br/>「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p> <p>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p> <p>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p> |
|                       | 17. 건설사업관리(*)                    | <p>「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p> <p>(*)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p> <p>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p>                                                                                            |
|                       | 18. 관리감독                         |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
| 지<br>원                | 19. 자문및강의                        |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
|                       | 20. 연구                           |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
|                       | 21.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
| 기<br>타                | 22. 기타                           |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 나. 책임정도 및 정의

| 건설공사업무               | 책임정도        | 정 의                                                                                |
|----------------------|-------------|------------------------------------------------------------------------------------|
| 시공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
| 품질관리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
| 환경관리                 | 환경관리자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 참여기술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
| 설계,<br>건설사업관리<br>(*) | 사업책임기술자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참여기술자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br>(시공단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
|                      | 상주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기술지원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관리감독                 | 용역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
|                      | 공사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
|                      | 일반감독        |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

####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가. 건설공사의 종류

| 공 사 종 류                     |                  |
|-----------------------------|------------------|
| 대 분 류                       | 소 분 류            |
| 1. 도 로                      | 1. 토 공           |
| 2. 고속국도                     | 2. 미장, 방수        |
| 3. 국 도                      | 3. 석 공           |
|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 4. 도 장           |
| 5. 공 항                      | 5. 조 적           |
| 6. 댐                        | 6. 비계·구조물해체      |
| 7. 간척·매립                    | 7. 금속구조물창호       |
| 8. 단지조성                     | 8. 지붕·판금         |
| 9. 택지개발                     | 9. 철근·콘크리트       |
| 10. 농지개량                    | 10. 철 물          |
|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 11. 기계설비         |
|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 12. 상·하수도설비      |
| 13. 지 하 철                   | 13. 보링·그라우팅      |
| 14. 터 널                     | 14. 철도·궤도        |
| 15. 발 전 소                   | 15. 포 장          |
| 16. 쓰레기소각시설                 | 16. 준 설          |
| 17. 폐수종말처리시설                | 17. 수 중          |
| 18. 하수종말처리시설                | 18. 조경식재         |
| 19. 산업시설                    | 19. 조경시설물설치      |
| 20. 환경시설                    | 20. 건축물조립        |
| 21. 저장·비축시설                 | 21. 강구조물         |
|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 22. 온실설치         |
| 23. 하 수 도                   | 23. 철강재설치        |
| 24. 공용청사                    | 24. 삭도설치         |
| 25. 송 전                     | 25. 승강기설치        |
| 26. 변 전                     | 26. 가스시설시공       |
|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
| 28. 통신·전력구                  | 28. 온돌시공         |
| 29. 기 타                     | 29. 시설물유지관리      |
|                             | 30. 화약관리(발파)     |
|                             | 31. 소방설비         |
|                             | 32. 실내건축         |
|                             | 33. 기 타          |

#####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부표 1]

##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 직무<br>분야      | 전문분야    | 기술사/<br>건축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기계            | 공조냉동및설비 | 공조냉동기계<br>건축기계설비 |                        | 공조냉동기계<br>건축설비               | 공조냉동기계<br>건축설비                                | 공조냉동기계                                                                                                                                              |
|               | 용접      | 용접               | 배관<br>용접               | 용접                           | 용접                                            | 배관<br>용접<br>특수용접                                                                                                                                    |
|               | 건설기계    | 건설기계<br>산업기계설비   | 판금제관<br>건설기계정비<br>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br>설비보전<br><br>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br><br>판금제관<br>건설기계정비<br>기계정비<br>생산자동화 | 판금제관<br>건설기계정비<br>기계정비<br>생산자동화<br>굴삭기운전<br>기중기운전<br>로더운전<br>롤러운전<br>모터그레이더운전<br>불도저운전<br>아스팔트포시운전<br>지게차운전<br>천장크레인운전<br>공기압축기운전<br>쇄석기운전<br>준설선운전 |
|               | 승강기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 일반기계    | 기계<br><br>금형     | 기계가공<br><br>금형제작       | 메카트로닉스<br>일반기계<br>기계설계       | 컴퓨터응용가공<br><br>기계설계<br><br>정밀측정<br><br>기계가공조립 | 컴퓨터응용선반<br>컴퓨터응용밀링<br><br>전산응용기계제도<br>연삭<br>정밀측정<br>금형<br>기계가공조립                                                                                    |
|               |         |                  |                        |                              |                                               |                                                                                                                                                     |
| 전기<br>·<br>전자 | 철도신호    | 철도신호<br>전기철도     |                        | 철도신호<br>전기철도                 | 철도신호<br>전기철도                                  |                                                                                                                                                     |
|               | 건축전기설비  | 건축전기설비<br>발송배전   | 전기                     | 전기<br>전기공사                   | 전기<br>전기공사                                    | 전기                                                                                                                                                  |
|               | 산업계측제어  | 산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br>전자기기                                                                                                                                      |
| 토목            | 토질· 지질  | 토질및기초<br>지질및지반   |                        | 응용지질<br>토목                   | 토목                                            |                                                                                                                                                     |
|               | 토목구조    | 토목구조             |                        | 토목                           | 토목                                            | 전산응용토목제도                                                                                                                                            |
|               | 항만및해안   | 항만및해안            |                        | 토목                           | 토목                                            |                                                                                                                                                     |
|               | 도로및공항   | 도로및공항            |                        | 토목                           | 토목                                            |                                                                                                                                                     |
|               | 철도· 석도  | 철도               |                        | 철도토목<br>토목                   | 철도토목<br>토목                                    | 철도토목                                                                                                                                                |
|               | 수자원개발   | 수자원개발            |                        | 토목                           | 토목                                            |                                                                                                                                                     |
|               | 상하수도    | 상하수도             |                        | 토목                           | 토목                                            |                                                                                                                                                     |
|               | 농어업토목   | 농어업토목            |                        | 토목                           | 토목                                            |                                                                                                                                                     |
|               | 토목시공    | 토목시공             |                        | 토목                           | 토목                                            | 석공                                                                                                                                                  |

|               |               |                                |                  |                      |                                           |                                                                                                  |
|---------------|---------------|--------------------------------|------------------|----------------------|-------------------------------------------|--------------------------------------------------------------------------------------------------|
|               | 토목품질관리        | 토목품질시험                         |                  | 건설재료시험<br>콘크리트<br>토목 | 건설재료시험<br>콘크리트<br>토목                      | 건설재료시험<br>콘크리트                                                                                   |
|               | 측량및지형공<br>간정보 | 측량및지형공<br>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br>간정보        | 측량및지형공<br>간정보<br>항공사진<br>지도제작<br>도화<br>지적 | 측량<br>항공사진<br>지도제작<br>도화<br>지적                                                                   |
|               | 지적            | 지적<br>측량및지형공<br>간정보            |                  | 지적<br>측량및지형공<br>간정보  | 지적<br>측량및지형공<br>간정보<br>항공사진<br>지도제작<br>도화 | 지적<br>측량<br>항공사진<br>지도제작<br>도화                                                                   |
| 건축            | 건축구조          | 건축구조                           |                  | 건축                   | 건축                                        |                                                                                                  |
|               | 건축기계설비        | 건축기계설비                         |                  | 건축설비<br>건축           | 건축설비<br>건축                                |                                                                                                  |
|               | 건축시공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br>건축목재시공 |                      | 건축일반시공<br>건축목공<br><br>방수<br><br>온수온돌      | 건축목공<br>거푸집<br>건축도장<br>도배<br>미장<br>방수<br>비계<br>온수온돌<br>유리시공<br>조적<br>철근<br>타일<br>금속재창호<br>플라스틱창호 |
|               | 실내건축          | -                              |                  | 실내건축<br>건축           | 실내건축<br>건축                                | 실내건축                                                                                             |
|               | 건축품질관리        | 건축품질시험                         |                  | 건축                   | 건축                                        |                                                                                                  |
|               | 건축계획·설계       | 건축사                            |                  | 건축                   | 건축제도<br>건축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                  |                      |                                           |                                                                                                  |
| 광업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취급                                                                                             |
|               | 광산보안          |                                |                  | 광산보안                 | 광산보안                                      | 시추                                                                                               |
| 도시<br>·<br>교통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도시계획                 |                                           |                                                                                                  |
|               | 교통            | 교통                             |                  | 교통                   | 교통                                        |                                                                                                  |
| 조경            | 조경계획          | 조경                             |                  | 조경                   | 조경                                        | 조경                                                                                               |
|               | 조경시공관리        | 조경                             |                  | 조경                   | 조경                                        | 조경                                                                                               |
| 안전<br>관리      | 건설안전          | 건설안전                           |                  | 건설안전<br>산업안전         | 건설안전<br>산업안전                              |                                                                                                  |
|               |               | 기계안전<br>화공안전<br>전기안전<br>산업위생관리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

|          |                 |                                     |             |                                                 |                                                         |                                                  |
|----------|-----------------|-------------------------------------|-------------|-------------------------------------------------|---------------------------------------------------------|--------------------------------------------------|
|          |                 | 금속재료                                | 금속재료<br>위험물 | 금속재료                                            | 금속재료<br>위험물                                             | 금속재료시험<br>위험물<br>축로                              |
|          | 소방              | 소방                                  |             | 소방설비(기계분야)<br>소방설비(전기분야)                        | 소방설비(기계분야)<br>소방설비(전기분야)                                |                                                  |
|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 관련<br>종목                      |             | 비파괴검사 관련<br>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br>종목                                          |                                                  |
| 환경       | 대기관리            | 대기관리                                |             | 대기환경                                            | 대기환경                                                    |                                                  |
|          | 수질관리            | 수질관리                                |             | 수질환경                                            | 수질환경                                                    |                                                  |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                                                  |
|          | 자연· 토양환경        | 토양환경<br>자연환경관리                      |             | 토양환경<br>자연생태복원<br>생물분류(동물)<br>생물분류(식물)          | 자연생태복원                                                  |                                                  |
|          | 해양              | 해양                                  |             | 해양환경<br>해양자원개발<br>해양공학<br>항로표지                  | 항로표지<br>잠수<br>해양조사                                      | 항로표지<br>잠수                                       |
| 건설<br>지원 | 건설마케팅           | 화공<br>섬유<br>공장관리<br>품질관리            | 에너지관리       | 화공<br>섬유<br><br>품질경영<br>에너지관리                   | 화공<br>섬유<br><br>품질경영<br>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 건설정보처리          | 정보관리<br>컴퓨터시스템응용<br><br>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전자계산기조직응용<br>정보처리<br><br>정보보안<br>전파전자통신<br>정보통신 | 사무자동화<br>정보처리<br><br>정보보안<br>전파전자통신<br>정보통신<br><br>통신선로 | 정보처리<br>정보기기운용<br><br>전파전자통신<br><br>통신기기<br>통신선로 |
|          | 건설금융·재무<br>건설기획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                                                 |                                                         |                                                  |
|          |                 |                                     |             |                                                 |                                                         |                                                  |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7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관련]

[표 1] &lt;개정 2013.3.23&gt;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삭제 <2009.7.16>

##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시설물인 1종 2종 시설물

| 구 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
| <b>1. 도로</b>                                  |                                                                                                      |                                                                                                                                                                                                           |
|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아치교, 사장교, 최대경간장 50미터이상)<br>▷연장 500미터이상 교량                                                 |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br>▷3차선 이상의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 지하차도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도                                                                                                                                                                  |
|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                                                                                                                                                        |
| <b>2. 철도</b>                                  |                                                                                                      |                                                                                                                                                                                                           |
| 고속철도                                          | ▷교량, 터널 및 역사                                                                                         |                                                                                                                                                                                                           |
| 도시철도                                          | ▷교량, 고가교 및 터널                                                                                        |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
| 일반철도                                          |                                                                                                      |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교량                                                                                                                                                                  |
| - 교량                                          | ▷트러스교량<br>▷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 -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광역전철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
| <b>3. 항만</b>                                  |                                                                                                      |                                                                                                                                                                                                           |
|                                               | ▷갑문시설<br>▷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 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br>▷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 ▷1만톤급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
| <b>4. 댐</b>                                   |                                                                                                      |                                                                                                                                                                                                           |
|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
| <b>5. 건축물</b>                                 |                                                                                                      |                                                                                                                                                                                                           |
|                                               | ▷21층이상의 공동주택<br>▷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                               |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br>▷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br>▷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
| <b>6. 하천</b>                                  |                                                                                                      |                                                                                                                                                                                                           |
| 하구둑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 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br>▷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br>▷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하천의 수문                                                      |
| <b>7.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b>                       |                                                                                                      |                                                                                                                                                                                                           |
|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 포함)<br>▷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 포함)<br>▷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 시설을 포함한다)<br>▷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이상)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br>▷하수처리장<br>▷매립면적 20만㎡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
| <b>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b> |                                                                                                      |                                                                                                                                                                                                           |
| 옹벽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절토사면                                          |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정기점검 : 2회/년(상반기, 하반기), 정밀점검 : 1회/2년, 정밀안전진단 : 1회/5년

초기점검 : 시특별시 제1종 제2종시설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는 준공전 초기점검 실시

##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 7.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의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공동사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
4. '제조 소기업등'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조 소기업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공공기관이 영 제2조의2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조 소기업 등을 추천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명칭,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조합의 추천기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의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조합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천 요청을 받은 조합은 공공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간 종료일까지 납품 요건에 맞는 제조 소기업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물품분류번호상의 제품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3항에서 정한 물품분류번호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추천 제한사항)** 제3조에 따른 조합 추천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21조의3을 준용하여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영 제2조의3 제4호에서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92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 부 칙

1. 이 공고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5호(2013. 8. 30)는 이를 폐지한다.

## (직접생산자 증명서 자료 보유 면허)

| 구분 | 산업<br>군 | 제품군          | 세분류      |               | 세부분류       |               | 산업<br>분류번호      | 특이사항                                                                                                                                                                      |
|----|---------|--------------|----------|---------------|------------|---------------|-----------------|---------------------------------------------------------------------------------------------------------------------------------------------------------------------------|
|    |         | 제품명          | 세        | 품명            | 세부         | 세부분명          |                 |                                                                                                                                                                           |
|    |         | 지질조사<br>및탐사업 | 81151799 | 지질연구조사<br>서비스 | 8115179901 | 지질연구조사<br>서비스 | 72923           | 지질관련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액 <b>[1천만원]</b> 이상 용역에 한함, 도로·철도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
|    |         | 측량           | 81151604 | 측량용역          | 8115160401 | 측량용역          | 72921,<br>72924 | 건설공사 설계 관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금액 <b>[3천만원]</b> 이상의 측량용역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93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에 한정하고 도로·철도(지하철)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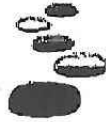
2014-OCT-27 12:41 From:

061 374 8456

To:061 370 8070

P.1

"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 중소기업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 지질조사)의 공동계약 제한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2013.1.1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 2012.12.27)한 바 있으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기업 및 외산제품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지질조사연구서비스(8115179901)' 및 '측량용역(8115160401)'을 '설계용역 등'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5. 최근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2014-268호)」 제8조의 취지와 노선사업(도로, 철도, 지하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감안할 때, 해당 용역들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6.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와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은 노선사업을 제외하고는 '설계용역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며, 이후 공동계약으로 반주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고시 1부, 끝.

## 제3장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39 호]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점수 환산표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점수 환산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39 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추정가격 30억 미만 10억 이상인 경우

| 항 목                  | 점 수 | 비 고                                       |
|----------------------|-----|-------------------------------------------|
| 당해용역수행능력점수<br>(PQ점수) | 65점 | 평점 = PQ점수 / [100× 65점]<br>※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                 | 30점 |                                           |
| 지역참여도                | 3점  | 30% 이상                                    |
|                      | 1점  | 20% 이상                                    |
|                      | 0점  | 20% 미만 또는 단독참여시                           |
| 경영상태                 | 2점  |                                           |

## △ 지역참여도 비율 30% 이상시

- ① PQ점수 + 입찰점수 + 지역참여도 점수 + 경영상태 = 90점 이상시 낙찰 가능
-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② 입찰점수(30점)+지역참여도 점수(3점)+경영상태 점수(2점)을 만점으로 가정 : 35점
- ③ 90점 - 35점 = 55점, 즉 PQ점수 65점 만점 중 55점이상 받아야 낙찰 유효 점수임.
- ④ PQ점수 55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⑤  $[55점 / 65점] \times 100 = 84.62점$
- ⑥ 산출된 84.62점을 평점 =  $[산출점수 / 100] \times 65점$ 으로 계산
- ⑦  $[84.62 / 100] \times 65 = 55.003$
- ⑧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하면 유효 점수 55점 **즉, 유효 PQ점수는 84.62점**

## △ 지역참여도 비율 20% 미만 또는 단독참여시

- ① 입찰점수(30점)+지역참여도 점수(0점)+경영상태 점수(2점)을 만점으로 가정 : 32점
- ③ 90점 - 32점 = 58점, 즉 PQ점수 65점 만점 중 58점이상 받아야 낙찰 유효 점수임.
- ④ PQ점수 58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⑤  $[58점 / 65점] \times 100 = 89.23점$
- ⑥ 산출된 89.23점을 평점 =  $[산출점수 / 100] \times 65점$ 으로 계산
- ⑦  $[89.23 / 100] \times 65 = 59.999$
- ⑧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하면 유효 점수 60점 **즉, 유효 PQ점수는 89.23점**

## ■ 추정가격 10억 미만 5억 이상인 경우

| 항 목                  | 점 수 | 비 고                                        |
|----------------------|-----|--------------------------------------------|
| 당해용역수행능력점수<br>(PQ점수) | 45점 | 평점 = PQ점수 / [100× 45점]<br>※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                 | 50점 |                                            |
| 지역참여도                | 3점  | 30% 이상                                     |
|                      | 1점  | 20% 이상                                     |
|                      | 0점  | 20% 미만 또는 단독참여시                            |
| 경영상태                 | 2점  |                                            |

## △ 지역참여도 비율 30% 이상시

- ① PQ점수 + 입찰점수 + 지역참여도 점수 + 경영상태 = 95점 이상시 낙찰 가능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② 입찰점수(50점) + 지역참여도 점수(3점) + 경영상태 점수(2점)을 만점으로 가정 : 55점
- ③ 95점 - 55점 = 40점, 즉 PQ점수 45점 만점 중 40점이상 받아야 낙찰 유효 점수임.
- ④ PQ점수 4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⑤  $[40점 / 45점] \times 100 = 88.89점$
- ⑥ 산출된 88.89점을 평점 =  $[산출점수 / 100] \times 45점$ 으로 계산
- ⑦  $[88.89 / 100] \times 45 = 40.005$
- ⑧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하면 유효 점수 40점 **즉, 유효 PQ점수는 88.89점**

## ■ 추정가격 5억 미만인 경우

| 항 목                  | 점 수 | 비 고                                         |
|----------------------|-----|---------------------------------------------|
| 당해용역수행능력점수<br>(PQ점수) | 35점 | 평점 = PQ점수 / [100 × 35점]<br>※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                 | 60점 |                                             |
| 지역참여도                | 3점  | 30% 이상                                      |
|                      | 1점  | 20% 이상                                      |
|                      | 0점  | 20% 미만 또는 단독참여시                             |
| 경영상태                 | 2점  |                                             |

### △ 지역참여도 비율 30% 이상시

① PQ점수 + 입찰점수 + 지역참여도 점수 + 경영상태 = 95점 이상시 낙찰 가능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점수(60점) + 지역참여도 점수(3점) + 경영상태 점수(2점)을 만점으로 가정 : 65점

③ 95점 - 65점 = 30점, 즉 PQ점수 35점 만점 중 30점이상 받아야 낙찰 유효 점수임.

④ PQ점수 3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⑤  $[30점 / 35점] \times 100 = 85.72점$

⑥ 산출된 85.72점을 평점 =  $[산출점수 / 100] \times 35점$ 으로 계산

⑦  $[85.71 / 100] \times 35 = 29.998$

⑧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하면 유효 점수 30점 **즉, 유효 PQ점수는 85.72점**

## 2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 행정자치부 예규 제 39 호 ]  
(2015. 12. 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 || 목 차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제9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부 칙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 행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1절 통 칙

####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관리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절 평가기준

####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 2.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 ·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 · 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 · 분할 · 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추정가격(복합용역은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용역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평가대상용역 점수가 해당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용역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와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바·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4”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 ·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8호 서식)

##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4절 “4”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

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 제10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br><br>*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5\text{점}$                                                                                                                               | 65  | ※주1) 참조           |
|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br>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br>○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 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이상 : 3점<br>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미만 10%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br>※주2) 참조 |
| 다. 경영 상태       |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계              |                                                                                                                                                                                                                                                    | 100 |                   |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평점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2.995%)

$$\text{① 평점} = 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7.995%)

$$\text{① 평점} = 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br>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br>해당<br>용역<br>수행<br>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br>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br><br>*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5\text{점}$                                                                                                                                                                                                         | 45  |           |
| 나.<br>지역<br>업체<br>참여<br>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br>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br><br>○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br>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br>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선택<br>적용 |
| 다.<br>경영<br>상태             |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
| 라.<br>입찰<br>가격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br><br>* 평점 = $50 - 2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br><br>*    는 절대값 표시임.<br>*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br>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br>*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br>*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br>은 45점으로 한다. | 50  |           |
| 마.<br>기술<br>인력<br>보유<br>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br>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br>(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br>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
| 계                          |                                                                                                                                                                                                                                                                                                                                 | 100 |           |

주)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평가는 <별표 1>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및 주5)와 같다.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br>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br>해당<br>용역<br>수행<br>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br>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br><br>*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5\text{점}$                                                                                                                                                                                                           | 35  |           |
| 나.<br>지역<br>업체<br>참여<br>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br>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br><br>○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br>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br>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선택<br>적용 |
| 다.<br>경영<br>상태             |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
| 라.<br>입찰<br>가격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br><br>*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br><br>*     는 절대값 표시임.<br>*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br>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br>*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br>*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br>점은 55점으로 한다. | 60  |           |
| 마.<br>기술<br>인력<br>보유<br>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br>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br>(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br>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
| 계                          |                                                                                                                                                                                                                                                                                                                                   | 100 |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평가는 <별표 1> “1. 추  
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및 주5)와 같  
다.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  
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lt;별표 2&gt;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br>A :100% 이상 : 27.0<br>B: 80% 이상 100% 미만 : 26.0<br>C: 60% 이상 80% 미만 : 24.0<br>D: 40% 이상 60% 미만 : 22.0<br>E: 40% 미만 : 20.0                                     | 2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br>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br>○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br>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1점 |                                                                                                                                                                                  | 3     | ※선택 적용<br>※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1)경 력 기술자 (7점)<br>A. 3.6 이상 : 7.0<br>B. 2.4 이상 3.6 미만 : 6.0<br>C. 1.8 이상 2.4 미만 : 5.0<br>(2)일 반 기술자 (3점)<br>A. 15인 이상 : 3.0<br>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br>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 10    | ※주3) 참조           |
|                | 4) 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주4) 참조           |
|                |              | (1)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30    |                   |
|                |              | (2) 재무평가                                                                                                                                                                                                                                              |                                                                                                                                                                                  | 30    |                   |
|                |              |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br>(자기자본 / 총 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br>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br>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br>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 (15)  |                   |
|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br>(유동자산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br>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br>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br>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br>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 (15)  |                   |
|                |              |                                                                                                                                                                                                                                                       |                                                                                                                                                                                  |       |                   |
|                | 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3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10   | ※주6) 참조           |
| 계              |              |                                                                                                                                                                                                                                                       |                                                                                                                                                                                  | 100   |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 양)을 말한다.
-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 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 양)을 말한다.
-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 확인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 등급계수: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1월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2.995%)

$$\textcircled{1} \text{ 평점} = 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7.995%)

$$\textcircled{1} \text{ 평점} = 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br>A:100% 이상 : 17.0<br>B: 80% 이상 100% 미만 : 16.0<br>C: 60% 이상 80% 미만 : 14.0<br>D: 40% 이상 60% 미만 : 12.0<br>E: 40% 미만 : 10.0                                    | 17    | ※주1) 참조           |
|                | 2) 지역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br>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br><br>○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br>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3     | ※선택 적용<br>※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1)경 력 기술자 (7점)<br>A. 2.4 이상 : 7.0<br>B. 1.8 이상 2.4 미만 : 6.0<br>C. 1.2 이상 1.8 미만 : 5.0<br>(2)일 반 기술자 (3점)<br>A. 12인 이상 : 3.0<br>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br>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 10    | ※주3) 참조           |
|                | 4) 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주4) 참조           |
|                |             | (1)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             | (2) 재무평가                                                                                                                                                                                                                                                    |                                                                                                                                                                               | 20    |                   |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br>(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0<br>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br>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br>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10)  |                   |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br>(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0<br>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br>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br>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10)  |                   |
| 나. 입찰 가격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50    | ※주5) 참조           |
| 다. 기술인력 보유 상황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10   | ※주6) 참조           |
| 계              |             |                                                                                                                                                                                                                                                             |                                                                                                                                                                               | 100   |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 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 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 4)와 같다.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textcircled{1} \text{ 평점} = 50 - 2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br>A:100% 이상 : 22.0<br>B: 80% 이상 100% 미만 : 21.0<br>C: 60% 이상 80% 미만 : 19.0<br>D: 40% 이상 60% 미만 : 17.0<br>E: 40% 미만 : 15.0                                      | 22    | ※주1) 참조           |
|                | 2) 지역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br>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br>○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br>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br>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3     | ※선택 적용<br>※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1)경 력 기술자 (3.5점)<br>A. 1.8 이상 : 3.5<br>B. 1.2 이상 1.8 미만 : 3.0<br>C. 0.6 이상 1.2 미만 : 2.5<br>(2)일 반 기술자 (1.5점)<br>A. 9인 이상 : 1.5<br>B. 6인 이상 9인 미만 : 1.0<br>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 5     | ※주3) 참조           |
|                | 4) 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주4) 참조           |
|                |             | (1)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             | (2) 재무평가                                                                                                                                                                                                                                                |                                                                                                                                                                                 | 20    |                   |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br>(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0<br>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br>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br>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10)  |                   |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br>(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0<br>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br>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br>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10)  |                   |
| 나. 입찰 가격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50    | ※주5) 참조           |
| 다. 기술인력 보유 상황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10   | ※주6) 참조           |
| 계              |             |                                                                                                                                                                                                                                                         |                                                                                                                                                                                 | 100   |                   |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 1)과 같다.
-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2)와 같다.
-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 4)와 같다.
-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 $$\textcircled{1} \text{ 평점} = 5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br>·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합)<br>·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br>· 등급점수 (단위: 점)<br><table border="1"><tr><th>구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h>D등급</th></tr><tr><td>평가 비율</td><td>60% 이상</td><td>60% 미만<br/>50% 이상</td><td>50% 미만<br/>40% 이상</td><td>40% 미만</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7.0</td><td>6.0</td></tr></table>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평가 비율 | 60% 이상 | 60% 미만<br>50% 이상 | 50% 미만<br>40% 이상 | 40% 미만 | 점수 | 10.0 | 9.0 | 7.0 | 6.0 | 10 | ※주1) 참조 |
|                |                                                                                             |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        |    |      |     |     |     |    |         |
|                |                                                                                             |                                                           |                                                                                                                                                                                                                                                                                                                                                                                                                                              | 평가 비율 | 60% 이상  | 60% 미만<br>50% 이상 | 50% 미만<br>40% 이상 | 40% 미만 |       |        |                  |                  |        |    |      |     |     |     |    |         |
|                |                                                                                             |                                                           |                                                                                                                                                                                                                                                                                                                                                                                                                                              | 점수    | 10.0    | 9.0              | 7.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경영 상태       |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0    | ※주2) 참조 |                  |                  |        |       |        |                  |                  |        |    |      |     |     |     |    |         |
|                |                                                                                             | 나)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10    |         |                  |                  |        |       |        |                  |                  |        |    |      |     |     |     |    |         |
|                |                                                                                             | 다) 재무평가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4.5<br>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4.0<br>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3.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3.0                                                                                                                                                                                                                                                                                            | 10    |         |                  |                  |        |       |        |                  |                  |        |    |      |     |     |     |    |         |
|                |                                                                                             | (1)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br>(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 |                                                                                                                                                                                                                                                                                                                                                                                                                                              | (5)   |         |                  |                  |        |       |        |                  |                  |        |    |      |     |     |     |    |         |
|                |                                                                                             | (2) 최근연도 유동비율<br>(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80                                                        | ※주3) 참조                                                                                                                                                                                                                                                                                                                                                                                                                                      |       |         |                  |                  |        |       |        |                  |                  |        |    |      |     |     |     |    |         |
| 다. 기술인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4) 참조                                                                                                                                                                                                                                                                                                                                                                                                                                      |       |         |                  |                  |        |       |        |                  |                  |        |    |      |     |     |     |    |         |
| 계              |                                                                                             |                                                           |                                                                                                                                                                                                                                                                                                                                                                                                                                              | 100   |         |                  |                  |        |       |        |                  |                  |        |    |      |     |     |     |    |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

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I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textcircled{1} \text{ 평점} = 80 - 20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0    | ※주1) 참조 |
|                |           | 나)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10    |         |
|                |           | 다) 재무평가                                                                                     |                                                                                                                                                  | 10    |         |
|                |           | (1)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br>(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br>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br>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 (5)   |         |
|                |           | (2) 최근연도 유동비율<br>(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br>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br>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 (5)   |         |
|                | 2) 특별 신인도 | 가)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 2.0                                                                                                                                            | +2.0  | ※주2) 참조 |
| 나. 입찰 가격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90    | ※주3) 참조 |
| 다. 기술인력 보유 상황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10   | ※주4) 참조 |
| 계              |           |                                                                                             |                                                                                                                                                  | 100   |         |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text{① 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 &lt;별표 3&gt;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br>한도 | 비고         |
|-------------------------|----------------|---------------------------------------------------------------------------------------------------------------------------------|---------------------------------------------------------------------------------------------------------------------------------------------------|----------|------------|
| 가. 해당<br>용역<br>수행<br>능력 | 1)<br>경영<br>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8        | ※주2)<br>참조 |
|                         |                | 나)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8        |            |
|                         |                | 다) 재무평가                                                                                                                         |                                                                                                                                                   | 8        |            |
|                         |                | (1) 최근연도<br>자기자본<br>비율<br>$\left(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right)$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4.0<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3.5<br>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3.0<br>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2.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2.0 | (4)      |            |
|                         |                | (2) 최근연도<br>유동비율<br>$\left(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right)$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4.0<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3.5<br>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3.0<br>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2.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2.0 | (4)      |            |
| 나.입찰가격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90       | ※주3)<br>참조 |
| 다.해당지역<br>영업활동<br>기간    |                |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br>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br>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br>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                                                                                                                                                   | 2        | ※주4)<br>참조 |
| 라.해당지역<br>실제영업<br>활동여부  |                | ○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                                                                                                                                                   | △10      | ※주5)<br>참조 |
| 마.기술인력<br>보유상황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br>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br>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10      | ※주6)<br>참조 |
| 계                       |                |                                                                                                                                 |                                                                                                                                                   | 100      |            |

주1) 이 평가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textcircled{1} \text{ 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lt;별표 2&gt;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br>한도                 | 비고         |
|-------------------------|---------------------------|-----------------------------------------------------------------------------------------------------------------------------------------------------------------------------------------------------|--------------------------------------------------------------------------------------------------------------------------------------------------------|--------------------------|------------|
| 가. 해당<br>용역<br>수행<br>능력 | 1)<br>경영<br>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7.5                      | ※주2)<br>참조 |
|                         |                           | 나)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7.5                      |            |
|                         |                           | 다) 재무평가                                                                                                                                                                                             |                                                                                                                                                        | 7.5                      |            |
|                         |                           | (1) 최근연도<br>자기자본<br>비율<br>$\left(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right)$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br>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3.0<br>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5<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2.0 | (4.0)                    |            |
|                         |                           | (2) 최근연도<br>유동비율<br>$\left(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right)$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3.5<br>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0<br>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2.5<br>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0<br>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 | (3.5)                    |            |
|                         | 2)<br>용역<br>수행<br>여유<br>율 |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0건<br>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1건<br>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2건<br>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3건 이상<br>※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                                                                                                                                                        | 0.5<br>0.4<br>0.2<br>0.0 | ※주3)<br>참조 |
| 나.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90                       | ※주4)<br>참조 |
| 다. 해당지역<br>영업활동<br>기간   |                           |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br>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br>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br>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                                                                                                                                                        | 2                        | ※주5)<br>참조 |
| 라. 해당지역<br>실제영업<br>활동여부 |                           | <별지> 참조                                                                                                                                                                                             |                                                                                                                                                        | △10                      | ※주6)<br>참조 |
| 마. 기술인력<br>보유상황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br>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br>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10                      | ※주7)<br>참조 |
| 계                       |                           |                                                                                                                                                                                                     |                                                                                                                                                        | 100                      |            |

주1) 이 평가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 밖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circled{1} \text{ 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 &lt;별지&gt;

##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 업체로 본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 1) 경영상태 평가는 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마"에 정한 바에 따른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바”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 1)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 2)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 3)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4)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3)”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7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 5)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 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로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 6)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기술용역 업종이 아니거나 다른 기술용역 면허 등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 7)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 9)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8”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10)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7”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 1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10”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를 감점한다.
- 12)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13)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가 0인 경우 | 분자가 0인 경우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배점한도 적용   | 최저등급 적용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적용   | 최저등급 적용   |

#### 다. 신용평가방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3)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 1)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 2)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마.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경영상태<br>(재무비율)<br>(2) | 합 계              |                            | 2.0  |    |
|                       |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0.8  |    |
|                       |                  |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0.6  |    |
|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0.4  |    |
|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0.2  |    |
|                       | ( 자기자본 / 총 자 산 ) |                            |      |    |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 1.0  |    |
|                       |                  |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 0.8  |    |
|                       |                  |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0.6  |    |
|                       |                  |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0.4  |    |
|                       |                  |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0.2  |    |
|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    |

- 주1)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 2)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2) 신용평가방법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br>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br>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2.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2.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주) “다. 신용평가방법”과 같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과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경영상  
태 평가표 (신용평가방법)

| 신 용 평 가 등 급         |                      |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
|---------------------|----------------------|-----------------------------|---------------|-----------------|----------------|------------|
| ① 회사채에 대한<br>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br>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br>이 상   | 10억원미만<br>5억원이상 | 5억원미만<br>2억원이상 | 2억원<br>미 만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20.0           | 1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20.0           | 10.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20.0           | 10.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20.0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0.0            | 20.0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0          | 19.0            | 19.0           | 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7.0          | 18.0            | 18.0           | 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24.0          | 15.0            | 15.0           | 6.0        |

주1) “다. 신용평가방법”과 같다.

-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용평가점수  
평점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신용평가점수 × 8/10
-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용평가점수  
평점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신용평가점수 × 7.5/10

&lt;별지 제1호 서식&gt;

##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용역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불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합니다.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불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경리관 귀하

접수증

1. 관리번호 :
2. 용역명 :
3. 제출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경리관 (인)

&lt;별지 제2호 서식&gt;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1. 심사대상용역

|      |  |
|------|--|
| 관리번호 |  |
| 입찰일시 |  |
| 용역명  |  |
| 용역기간 |  |
| 입찰금액 |  |
| 예정가격 |  |
| 제출기한 |  |

### 2. 심사대상자

|      |                     |      |  |
|------|---------------------|------|--|
| 업체명  |                     |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 업종구분 | 감리( ), 설계( ), 기타( ) |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  |
|----|--|-------|--|
| 소속 |  |       |  |
| 직위 |  | FAX번호 |  |
| 성명 |  | 전화번호  |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분           |      | 배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 100 |      |      |
| 수행능력         |      |     |      |      |
| 지역업체참여도      |      |     |      |      |
| 경영상태         | 자본비율 |     |      |      |
|              | 유동비율 |     |      |      |
| 입찰가격         |      |     |      |      |
| 해당지역영업활동기간   |      |     |      |      |
| 해당지역실제영업활동여부 |      |     |      |      |
| 기술인력         |      |     |      |      |

<별지 제3호 서식>

#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                      |               |      |       |       |                                              |    |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       | 대 표 자 |                                              |    |
|                      | 영업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자번호                |               |      |       | 제 출 처 |                                              |    |
|                      | 증명서용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       |       |                                              |    |
|                      | 용역범위·기준<br>(면적·금액 등) |               |      |       |       |                                              |    |
| 용역<br>이행<br>실적<br>내용 | 용 역 명                |               |      |       | 구분    | 설계 (       )<br>감리 (       )<br>기타 (       ) |    |
|                      | 용역 개요                |               |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 비고 |
|                      |                      |               |      |       | 비율    | 실적                                           |    |
|                      |                      |               |      |       |       |                                              |    |
| 증명서<br>발 급<br>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기 관 명                | (인)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FAX번호 |       |                                              |    |
|                      | 발급부서                 |               |      | 담 당 자 |       |                                              |    |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lt;별지 제4호 서식&gt;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구분                                                                                                                                                                                                                                                                                                                                  | 기술 분야         | 기술자 종류                                                                                                            | 적용 용역                                                                          | 학 력 ·<br>경 력 기<br>술 자 수 | 국 가 기 술 자<br>격 법 에 따 른<br>기 술 자 수 |
|-------------------------------------------------------------------------------------------------------------------------------------------------------------------------------------------------------------------------------------------------------------------------------------------------------------------------------------|---------------|-------------------------------------------------------------------------------------------------------------------|--------------------------------------------------------------------------------|-------------------------|-----------------------------------|
| 일                                                                                                                                                                                                                                                                                                                                   | 토목            | 항만과 해안, 도로와 공항, 토목, 토목<br>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br>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br>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br>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등 |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br>(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br>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br>상수도, 하수도 등) | (   )                   | (   )                             |
|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                                                                                |                         | 명                                 |
| 반                                                                                                                                                                                                                                                                                                                                   | 건축            |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br>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br>질시험 등                                                               |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br>(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br>공동주택 등)                               | (   )                   | (   )                             |
|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                                                                                |                         | 명                                 |
| 기                                                                                                                                                                                                                                                                                                                                   | 기계<br>·<br>환경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br>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br>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 해당 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br>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br>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br>종말처리장 등)           | (   )                   | (   )                             |
|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                                                                                |                         | 명                                 |
| 자                                                                                                                                                                                                                                                                                                                                   | 전기            |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br>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br>기설비, 공업계측제어                                                       |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br>(송전, 변전 등)                                                  | (   )                   | (   )                             |
|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                                                                                |                         | 명                                 |
|                                                                                                                                                                                                                                                                                                                                     | 기타<br>(   )   | (   )                                                                                                             | (   )                                                                          | (   )                   | (   )                             |
|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                                                                                |                         | 명                                 |
| <p>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회사명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발급기관명)</p> |               |                                                                                                                   |                                                                                |                         |                                   |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주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lt;별지 제5호 서식&gt;

##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 구 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     |     |     |     | 비고 |
|------------------|-----------------|-----|-----|-----|-----|-----|----|
|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 합 계 |    |
| 일반기술자<br>(인 원 수) |                 |     |     |     |     |     |    |
| 경력기술자<br>(점 수)   |                 |     |     |     |     |     |    |

나. 경력기술자 현황

|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br>등<br>급 | 용역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
|     |    |    |        |               |     |      |    | 증명서<br>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lt;별지 제6호 서식&gt;

##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        |                 |      |              |      |
|-----------------------------------------------------------------------------------------------------------------------------------------------------------------------------------------------------------------------------|--------|-----------------|------|--------------|------|
| 소 속                                                                                                                                                                                                                         |        | 직 위             |      | 공 종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참여기간         |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등급           |      | 용역분야<br>종사기간 |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span> <span>* 금액 : 천원</span> </div>                                                                                                      |        |                 |      |              |      |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br>규모 · 금액 | 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p>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p> <p style="text-align: right;">회사명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 (인)</p> |        |                 |      |              |      |
|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발급기관명)</p>                                                                                                                                                                 |        |                 |      |              |      |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 ·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 · 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lt;별지 제7호 서식&gt;

## ( )결산서 감사보고서

|     |  |     |  |       |  |      |  |
|-----|--|-----|--|-------|--|------|--|
| 상 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업 종 |  |     |  |       |  |      |  |
| 연 번 |  |     |  |       |  |      |  |

**1.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 출 근 거 (단위 : 원) |                 |
|----------------|-------|------------------|-----------------|
| 부채비율           |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차입금의존도         |       | 차입금              | 총자산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 영업이익             | 매출액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매출액             |
| 총자산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총자산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자산회전율          |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lt;별지 제8호 서식&gt;

##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br>(확인기관) | 비 고       |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 제1호 서식 |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 제2호 서식 |
| 이행실적 |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관련협회<br>발 주 처  | 별지 제3호 서식 |
| 기술능력 | 4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관계기관           | 별지 제4호 서식 |
|      | 5  |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 청 자          | 별지 제5호 서식 |
|      | 6  |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계기관           | 별지 제6호 서식 |
| 경영상태 | 7  |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br>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회계법인 등         | 별지 제7호 서식 |
|      |    |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 회계법인           |           |
|      | 8  |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           |           |
|      | 9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         |           |
| 기술인력 | 10 | 기술자보유증명서                          | 관련협회           |           |
| 기 타  | 11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

## 제4장 PQ 평가기준 관계법령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015-1097호, 별표 3호)-2015.12.30. 시행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PQ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015-1097호, 별표 5호)-2015.12.30. 시행
3.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제 40호]
4.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제 40호]  
※ 공동계약 관련 유·무효 여부 판단 기준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자부 예규 제 39호]
6. 설계공모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제 39호]
7.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1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9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5-471호, 201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pm 20$ 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타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나. 발주청은 1호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정 2015. 6. 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5. 12 . 30>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첨부5 서식(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기술자 |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br/>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li> <li>-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100%를 적용할 수 있음)</li> <li>-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li> <li>-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li> <li>-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br/>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li> <li>-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br/>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li> </ul>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기술자 |               |      | - 참여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1)책임기술자      | (18) |                                                                                                                                                                                                                                                                                                                            |
|          | (가)등급         | 4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실적         | 6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
|          | (라)기술능력       | 1    |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
|          | (마)업무관리능력     | 1    | -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br>*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첨부1)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br>※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22) |                                                                                                                                                                                                                                                                                                                            |
|          | (가) 등급        | 5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8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9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
|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8)  |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가) 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동일하게 평가)                                                                                                                                                                                                                                                                                    |
|          | (나) 경력        | 3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3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기술자    | (4)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br>(가) 교육훈련 | (2)<br><br>1    |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br>·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br>·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br>· 사업책임기술자 : 0.5점<br>·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br>*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실적                                  | [15]<br><br>(7) |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br>-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br>-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br>-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br>-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br>-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2)금액                                  | (7)             |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             | (3)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br>-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신용도 |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10]<br>(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li><li>-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li><li>-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br/>*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li><li>-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li><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li><li>-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li><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ul> <table><tr><td>회사채</td><td>A-이상</td><td>A-미만<br/>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2-이상</td><td>A2-미만<br/>A3-이상</td><td>A3-미만<br/>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A-이상</td><td>A-미만<br/>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0</td></tr></table>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개발실적 | [15]<br>(2)                                                                                                                                                                                                                                                                                                                                                                                                                                                                                                                                                                                                                                                                                                                         | <div><div>-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div><div>-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div><div><div>· 건설신기술 : 1.0점/건</div><div>·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div><div>·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div></div><table><tr><td>경과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br/>10년 미만</td><td>10년 이상<br/>2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div><div>-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div><div>-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div></div></div>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br>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br>20년 미만   |                    |                    |                    |                    |      |      |     |      |      |     |   |
| 특 허            | 100%    | 80%                                                                                                                                                                                                                                                                                                                                                                                                                                                                                                                                                                                                                                                                                                                                 | 60%                                                                                                                                                                                                                                                                                                                                                                                                                                                                                                                                                                                                                                                                                                                                                                                                                  |                    |                    |                    |                    |                    |      |      |     |      |      |     |   |
| 실용신안           | 100%    | 80%                                                                                                                                                                                                                                                                                                                                                                                                                                                                                                                                                                                                                                                                                                                                 | -                                                                                                                                                                                                                                                                                                                                                                                                                                                                                                                                                                                                                                                                                                                                                                                                                    |                    |                    |                    |                    |                    |      |      |     |      |      |     |   |
| (2)투자실적        | (10)    | <div><div>-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div><div>·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div></div> <table><tr><td>구분</td><td>3% 이상</td><td>3.0% 미만<br/>2.5% 이상</td><td>2.5% 미만<br/>2.0% 이상</td><td>2.0% 미만<br/>1.5% 이상</td><td>1.5% 미만<br/>1.0% 이상</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div><div>-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div><div>- R&amp;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div><div>-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div></div> | 구분                                                                                                                                                                                                                                                                                                                                                                                                                                                                                                                                                                                                                                                                                                                                                                                                                   | 3% 이상              | 3.0% 미만<br>2.5% 이상 | 2.5% 미만<br>2.0% 이상 | 2.0% 미만<br>1.5% 이상 | 1.5% 미만<br>1.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구분             | 3% 이상   | 3.0% 미만<br>2.5% 이상                                                                                                                                                                                                                                                                                                                                                                                                                                                                                                                                                                                                                                                                                                                  | 2.5% 미만<br>2.0% 이상                                                                                                                                                                                                                                                                                                                                                                                                                                                                                                                                                                                                                                                                                                                                                                                                   | 2.0% 미만<br>1.5% 이상 | 1.5% 미만<br>1.0% 이상 |                    |                    |                    |      |      |     |      |      |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      |      |     |      |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3)활용실적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li><li>-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li><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설신기술 : 1.0점/건</li><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li><li>·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li></ul></li><li>-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li><li>-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li></ul></li></ul>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가중치            |                |  |  |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br>(건) | 5 이상 | 5 미만<br>4 이상 | 4 미만<br>3 이상 | 3 미만<br>2 이상 | 2 미만<br>1 이상 | 활용금액<br>(억원) | 20 이상 | 20 미만<br>18 이상 |
| 구분               |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1.0     | 0.9            | 0.8                                                                                                                                                                                                                                                                                                                                                                                                                                                                                                                                                                                                                                                                                                                                                                                                                                                                                                                                       | 0.7            | 0.6            |  |  |  |     |     |     |     |     |             |      |              |              |              |              |              |       |                |
| 활용건수<br>(건)      | 5 이상    | 5 미만<br>4 이상   | 4 미만<br>3 이상                                                                                                                                                                                                                                                                                                                                                                                                                                                                                                                                                                                                                                                                                                                                                                                                                                                                                                                              | 3 미만<br>2 이상   | 2 미만<br>1 이상   |  |  |  |     |     |     |     |     |             |      |              |              |              |              |              |       |                |
| 활용금액<br>(억원)     | 20 이상   | 20 미만<br>18 이상 | 18 미만<br>16 이상                                                                                                                                                                                                                                                                                                                                                                                                                                                                                                                                                                                                                                                                                                                                                                                                                                                                                                                            | 16 미만<br>14 이상 | 14 미만<br>12 이상 |  |  |  |     |     |     |     |     |             |      |              |              |              |              |              |       |                |

| 평가<br>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br>업<br>무<br>중<br>복<br>도 |        | [10]     |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p> <p>· 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p> <p>※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p> <p>사례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1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p> <p>사례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p> <p>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p> <table><tr><th>사례</th><th>만점</th><th>만점×0.9</th><th>만점×0.8</th><th>만점×0.7</th><th>만점×0.6</th><th>...</th></tr><tr><td>①</td><td>150%미만</td><td>150~200%</td><td>200~250%</td><td>250~300%</td><td>300~350%</td><td>...</td></tr><tr><td>②</td><td>200%미만</td><td>200~300%</td><td>300~400%</td><td>400~500%</td><td>500~600%</td><td>...</td></tr><tr><td>③</td><td>300%미만</td><td>300~350%</td><td>350~400%</td><td>400~450%</td><td>450~500%</td><td>...</td></tr></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p>-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p> | 사례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 | ① | 150%미만 | 150~200% | 200~250% | 250~300% | 300~350% | ... | ② | 200%미만 | 200~300% | 300~400% | 400~500% | 500~600% | ... | ③ | 300%미만 | 300~350% | 350~400% | 400~450% | 450~500% | ... |
|                             | 사례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150%미만   | 150~200%                                                                                                                                                                                                                                                                                                                                                                                                                                                                                                                                                                                                                                                                                                                                                                                                                                                                                                                                                                                                                                                                                                                                                                                                 | 200~250% | 250~300% | 300~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200%미만 | 200~300% | 300~400%                                                                                                                                                                                                                                                                                                                                                                                                                                                                                                                                                                                                                                                                                                                                                                                                                                                                                                                                                                                                                                                                                                                                                                                                 | 400~500% | 500~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300%미만 | 300~350% | 350~400%                                                                                                                                                                                                                                                                                                                                                                                                                                                                                                                                                                                                                                                                                                                                                                                                                                                                                                                                                                                                                                                                                                                                                                                                 | 400~450% | 450~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책임기술자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분야별<br>책임기술자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ul> </li> <li>*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 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 [부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 I. 일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충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

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 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첨부

용역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기술능력 평가서

###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br>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br>등급)                   |
| BBB0              | A30               | B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br>등급)           |
| BB-               | B0                | 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br>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br>등급)                |

##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                                                                                                                                              |                                     |      |          |            |     |           |    |    |
|----------------------------------------------------------------------------------------------------------------------------------------------|-------------------------------------|------|----------|------------|-----|-----------|----|----|
|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            | 대표자 |           |    |    |
|                                                                                                                                              | 영업소재지                               |      |          |            |     |           | 전화 |    |
|                                                                                                                                              | 사업자번호                               |      |          |            |     |           | 팩스 |    |
|                                                                                                                                              | 증명서용도                               |      |          |            | 제출처 |           |    |    |
| 연구수행<br>실적내용                                                                                                                                 | 사 업 명                               |      |          |            |     | 과제유형      |    |    |
|                                                                                                                                              | 연구과제명                               |      |          |            |     | 총연구기간     |    |    |
|                                                                                                                                              | 연 구 내 용<br>(요약)                     |      |          |            |     |           |    |    |
|                                                                                                                                              | 기<br>업<br>부<br>담<br>금<br><br>내<br>역 | 구 분  | 참여<br>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 기업부담금(현금) |    | 비고 |
|                                                                                                                                              |                                     | 1차년도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4차년도 |          |            |     |           |    |    |
| 5차년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top: 1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10px; color: red;">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                                     |      |          |            |     |           |    |    |

##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                                                                                                                  |  |                                                            |  |                                           |  |
|------------------------------------------------------------------------------------------------------------------|--|------------------------------------------------------------|--|-------------------------------------------|--|
| I. 일반적인 사항                                                                                                       |  |                                                            |  | 발급번호                                      |  |
| 1) 용역명                                                                                                           |  | (국문)<br>(영문)                                               |  | 2) 발주기관<br>(발주국)                          |  |
| 3) 발주기관성격                                                                                                        |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 4) 계약주체<br>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
| 5) 신청자                                                                                                           |  | 5-1) 회사명                                                   |  | 5-2) 면허번호                                 |  |
| (대표)                                                                                                             |  | 5-4) 영업소재지                                                 |  | 5-3) 대표자                                  |  |
| 6) 계약 및 준공                                                                                                       |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 7) 원도급 여부                                                                                                        |  | 원도급( ), 하도급( )                                             |  | ※ 해당란에 ○ 표                                |  |
| 8) 공동도급 여부                                                                                                       |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 ※ 해당란에 ○ 표                                |  |
| 9) 실적의 종류                                                                                                        |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                                           |  |
| II. 용역실적의 내용                                                                                                     |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  |
| 구분                                                                                                               |  | 계약자 (대표)                                                   |  | 계 약 자                                     |  |
| 1) 회사명                                                                                                           |  |                                                            |  |                                           |  |
| 2) 대표                                                                                                            |  | (인)                                                        |  | (인)                                       |  |
| 3) 준공금액                                                                                                          |  | (지분 : %)                                                   |  | (지분 : %)                                  |  |
| 4) 전체용역규모<br>(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  |                                                            |  |                                           |  |
| III. 붙임                                                                                                          |  |                                                            |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주 소 :<br/>회사명 :<br/>대 표 : (인 )</p> |  |                                                            |  |                                           |  |
| 확인자                                                                                                              |  |                                                            |  |                                           |  |
| 용도                                                                                                               |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용역명                                                                                                              |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
| 발주처                                                                                                              |  |                                                            |  |                                           |  |

##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                                                                                                                                                                                      |                                         |                 |           |                                          |                  |  |
|--------------------------------------------------------------------------------------------------------------------------------------------------------------------------------------|-----------------------------------------|-----------------|-----------|------------------------------------------|------------------|--|
| I. 일반적인 사항                                                                                                                                                                           |                                         |                 |           | 발급번호                                     |                  |  |
| 1) 신청인                                                                                                                                                                               | 1-1) 회사명                                |                 |           |                                          | 1-2) 대표자         |  |
|                                                                                                                                                                                      | 1-3) 영업소재지                              |                 |           |                                          | 1-4) 면허번호        |  |
| II. 해외설계용역                                                                                                                                                                           |                                         |                 |           |                                          |                  |  |
| 1) 공사명                                                                                                                                                                               | (국문)<br>(영문)                            |                 |           |                                          | 2) 발주기관<br>(발주국) |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 3-4) 계약금액                               |                 |           | 3-5) 준공금액                                |                  |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                 |           |                                          |                  |  |
| III. 참여기술자 현황                                                                                                                                                                        |                                         |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           |                                          |                  |  |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
| 1) 사업책임기술자                                                                                                                                                                           | ○○○                                     | 000000-0000000  | ○○○기술사    | ○○○○○○○                                  | 개월               |  |
| 2) ○○분야 책임기술자                                                                                                                                                                        | ○○○                                     |                 |           |                                          | 개월               |  |
| 3) ○○분야 책임기술자                                                                                                                                                                        | ○○○                                     |                 |           |                                          | 개월               |  |
| 4) ○○분야 책임기술자                                                                                                                                                                        | ○○○                                     |                 |           |                                          | 개월               |  |
| 5) ○○분야 책임기술자                                                                                                                                                                        | ○○○                                     |                 |           |                                          | 개월               |  |
| IV. 붙임                                                                                                                                                                               |                                         |                 |           |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u>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u>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br/>회사명 :<br/>대 표 : (인)</p> |                                         |                 |           |                                          |                  |  |
| 확인자                                                                                                                                                                                  |                                         |                 |           |                                          |                  |  |
| 용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위 내용을 증명함.<br><br>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  |
| 발주처                                                                                                                                                                                  |                                         |                 |           |                                          |                  |  |
| 공사명                                                                                                                                                                                  |                                         |                 |           |                                          |                  |  |

## 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별 표 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br>참여<br>기술자    | (1) 책임기술자                                | [45]<br>(18)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br>-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br>*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가) 등급<br>(나) 경력<br>(다) 실적(건수)<br>실적(금액) | -<br>8<br>5<br>5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br>*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2) 분야별<br>책임기술자                         | (18)               | ○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br>-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br>*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나.<br>유사용역<br>수행실적 | (가) 등급<br>(나) 경력<br>(다) 실적(건수)           | (9)<br>2<br>3<br>4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br>*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1) 건수<br>(2) 금액                         | (12)<br>(13)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br>*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                    |                                          | [25]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br>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br>평가결과<br><br>(2) 입찰참가제한,<br>업무정지<br><br>(3) 재정상태<br>건실도 | [10]<br><br>(4)<br><br>(3)<br><br>(3)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br>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br><br>-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br>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br>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br>- 참여건설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br>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br>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br><br>-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br>* 첨부 참조                                     |
| 라.<br>기술개발<br>및 투자<br>실적 | (1) 개발·사용<br>실적<br><br>(2) 투자실적                                          | [10]<br><br>(2)<br><br>(8)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br>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br>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br>1점까지만 인정한다.<br>-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br>- 특허 : 0.6점 / 건당<br>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br>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br>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br>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br><br>-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br>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마.<br>업무<br>중첩도          | (1) 책임기술자<br><br>(2) 분야별 책임<br>기술자(또는<br>참여기술자)                          | [10]<br><br>(6)<br><br>(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br>*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br>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br><br>-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br>*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br>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br>*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br>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ul> </li> <li>*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 비교 : 위 [별표3]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3에 따른다.

## [부표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I.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건축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한다.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

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 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행정자치부 예규 제 40 호 ]  
( 2015. 01. 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 목 차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절 총 칙

###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제6절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

### 제7절 실비 산정

###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6장 선금 때가 지급요령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혼합방식 공동계약 관련 유·무효 여부 판단 기준]

##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제11장 입찰 유의서

##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부 칙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1절 통 칙

####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
-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http://www.s2b.kr))
-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http://www.eat.co.kr))
-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http://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 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 · 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 시 · 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사. 인접 시 · 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지역과 행정구

역상 접하는 시·도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도에서 제외한다)

###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                     |                     | 견 적 서<br>제출방법                              |
|---------------|-----------|------------------------------------------------------------------------------------------------------------------------------------------------------------------------------------------------------------------------------------------------------------------------------------------------------------------------------|--------------------|---------------------|---------------------|--------------------------------------------|
|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br>그 밖의 공사     | 용역·물품<br>기타         |                                            |
| 2인 이상<br>견적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br>2억 원<br>이하                                                                                                                                                                                                                                                                                                           | 추정가격<br>1억 원<br>이하 | 추정가격<br>8천만 원<br>이하 | 추정가격<br>5천만 원<br>이하 | ○ 지정정보처리장<br>치에 의한 계약<br>○ 예외 : 제4절 참<br>조 |
| 1인 견적<br>제출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                     |                     | ○ 지정정보처리장<br>치에 의하지 않<br>고 수의계약 가<br>능     |
|               | 하자곤란<br>등 |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br>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나·<br>다·마목)                                                                                                                                                                                                                                                      |                    |                     |                     |                                            |
|               | 천재지변<br>등 |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br>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br>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br>○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br>○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br>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br>○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br>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br>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br>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br>호) |                    |                     |                     |                                            |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가. 대상

|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                     |                     | 견 적 서<br>제출방법                      |
|---------------|----------|--------------------|--------------------|---------------------|---------------------|------------------------------------|
|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br>그 밖의 공사     | 용역·물품<br>기타         |                                    |
| 2인 이상<br>견적제출 | 금액<br>기준 | 추정가격<br>2억 원<br>이하 | 추정가격<br>1억 원<br>이하 | 추정가격<br>8천만 원<br>이하 | 추정가격<br>5천만 원<br>이하 | ○ 지정정보처리장치<br>에 의함<br>○ 예외: 제4절 참조 |

##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나) 규격
- 다) 재질·품질
-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사) 제조공장·처리장
-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

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한다.

- 10) 국내 · 외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박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 11)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                 |             | 견 적 서<br>제출방법                 |
|---------------|----------|---------------|------|-----------------|-------------|-------------------------------|
|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br>그 밖의 공사 | 용역·물품<br>기타 |                               |
| 1인 견적<br>제출가능 | 금액<br>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                 |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br>않고 수의계약 가능 |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 구 분                        | 구 체 적 범 위                                                                                                                          | 수의계약 제외대상                                                                                                                                                                                           |
|----------------------------|------------------------------------------------------------------------------------------------------------------------------------|-----------------------------------------------------------------------------------------------------------------------------------------------------------------------------------------------------|
| 1) 하자에 대한 책임<br>구분이 곤란한 경우 |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 하천축제 · 하천호안 · 도로포장 · 도로개설 · 상·하수도 접합 · 조경 · 토공 ·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br>▪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br>▪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br>※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
| 2) 작업상 혼잡<br>등의 경우         |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
| 3) 마감공사의 경우                |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 옹벽 ·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br>▪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br>▪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br>※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

| 구 분                                            | 구 체 적 범 위                                                                                                                                                                                                                     | 수의계약 제외대상 |
|------------------------------------------------|-------------------------------------------------------------------------------------------------------------------------------------------------------------------------------------------------------------------------------|-----------|
| 4)특허공법 · 신기술 ·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li> </ul> |           |

※ 특허 · 신기술(이하 이 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 라. 평가결과

-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마. 평가요령

##### 1) 일반사항

##### 가) 시공능력평가액

-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 나) 시공여유율

- (1)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계약금액) 3억 원(전문 7천만 원, 전기·소방·그 밖의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 다) 경영상태

- (1)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AA-          | A1                | ①의 AAA~AA-에 준하는 등급  |
| A+~A-            | A2+~A2-           | ①의 A+~A-에 준하는 등급    |
| BBB+~BBB-        | A3+~A3-           | ①의 BBB~BBB-에 준하는 등급 |
| BB+~B-           | B+~B-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CCC+             | C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 라) 신인도 평가

-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 (2)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 · 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 · 보상비 · 공사수탁비 및 시설 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 구 분 | 계 약 금 액                                                                                                                                                                                                                                                                                                                                                                                                                     |
|-----|-----------------------------------------------------------------------------------------------------------------------------------------------------------------------------------------------------------------------------------------------------------------------------------------------------------------------------------------------------------------------------------------------------------------------------|
| 원칙  |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 예외  | <p>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p> <p>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p> <p>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p> |

####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6)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의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13)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14)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7)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8)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거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19)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2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2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 ※ 단, 2015.12.31.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한다.
-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 2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27)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8)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29)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30)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 · 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 · 19) · 22) · 23) · 24) · 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나. 세부평가 방법

-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청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 계약

###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

- 1) 음식물(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2) 국내 · 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 · 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6) 그밖에 계약의 목적 ·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 ·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 1. 공통사항

-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나. 이 경우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제1장 제1절의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lt;별표 1&gt;

### 수의계약 결격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lt;별표 2&gt;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                                                            |                                                              |                                                                 | 담당                                                               |                                                 | (인)                                  |
|---------------|------------------------------------------------------------|--------------------------------------------------------------|-----------------------------------------------------------------|------------------------------------------------------------------|-------------------------------------------------|--------------------------------------|
|               |                                                            |                                                              |                                                                 | 과장                                                               |                                                 | (인)                                  |
| 일반<br>사항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 등 급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시공능력<br>공 시 액<br>(8)                                       |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br>▪ 발주공사 추정금액의<br>▪ 발주공사 추정금액의<br>▪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 A. 3.0배 이상<br>B. 2.0배 이상<br>C. 1.5배 이상<br>D. 1.5배 미만             |                                                 | 8.0점<br>7.2점<br>6.4점<br>5.6점         |
|               | 시 공<br>여 유 율<br>(8)                                        | ▪ 진행 중인 관급공사<br>▪ 진행 중인 관급공사<br>▪ 진행 중인 관급공사<br>▪ 진행 중인 관급공사 |                                                                 | A. 1건 이하<br>B. 2건<br>C. 3건<br>D. 4건 이상                           |                                                 | 8.0점<br>7.2점<br>6.4점<br>5.6점         |
|               | 경영상태<br>(8)                                                | ▪ 최근연도 유동비율<br>(유동자산/ 유동부채)<br>-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br>당업체 유동비율 |                                                                 | A. 150% 이상<br>B. 120% 이상<br>C. 100% 이상<br>D. 70% 이상<br>E. 70% 미만 | AAA~AA-<br>A+~A-<br>BBB+~BBB-<br>BB+~B-<br>CCC+ | 8.0점<br>7.2점<br>6.4점<br>5.6점<br>4.8점 |
|               | 신 인 도 (6)<br>(부실시공의 제재처분<br>등, 수의계약요청서 접수<br>일 기준 최근1년 이내) |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법 · 정보통신공사법<br>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br>받은 경우 |                                                                  | 무                                               | 3점                                   |
|               |                                                            |                                                              |                                                                 |                                                                  | 유                                               | △3점                                  |
|               |                                                            |                                                              |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br>재처분을 받은 경우                        |                                                                  | 무                                               | 3점                                   |
|               |                                                            |                                                              |                                                                 |                                                                  | 유                                               | △3점                                  |
| 기술<br>사항      | 사유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 평점(70)                                          |                                      |
|               | ① 하 자                                                      | ㉠공사규모비                                                       |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 [ ( ㉠ + ㉡ ) / 2 ]<br>×70%=점수                    |                                      |
|               |                                                            | ㉡하자보수보증기간                                                    | ( 전 차 하 자 보 증 잔 여 기 간 / 금 차 공 사 기<br>간)×100= %                  |                                                                  |                                                 |                                      |
|               | ② 혼 잡                                                      | ㉠시간적중복도                                                      |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 + ㉡ ) / 2 ]<br>×70%=점수                    |                                      |
|               |                                                            | ㉡공사규모비                                                       |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                                                 |                                      |
|               | ③ 마 감                                                      | ㉠뒷마무리공사 규<br>모비                                              |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br>추정금액]×100= %                            |                                                                  | ㉠×70%=점수                                        |                                      |
|               |                                                            | ㉡부대시설공사 규<br>모비                                              |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br>부대시설공사 추정금액] ×100= %                 |                                                                  | ㉡×70%=점수                                        |                                      |
|               | ④ 특허 공<br>법 등                                              | ㉠독점적 기술의 공<br>사규모비                                           | (특허 · 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br>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 ㉠×70%=점수                                        |                                      |
| 평가<br>결과      | 일반사항                                                       | 점                                                            | 입찰계약 추진대상                                                       |                                                                  |                                                 |                                      |
|               | 기술사항                                                       | 점                                                            | 수의계약 추진대상                                                       |                                                                  |                                                 |                                      |
|               | 합 계                                                        | 점                                                            |                                                                 |                                                                  |                                                 |                                      |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lt;별지 1&gt;

# 각 서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귀하

## &lt;별지 2&gt;

| 수 의 계 약 요 청 서                                                                                                                                                                                                                      |              |  |       |  |
|------------------------------------------------------------------------------------------------------------------------------------------------------------------------------------------------------------------------------------|--------------|--|-------|--|
| 전차(관련)<br>공 사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
|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
|                                                                                                                                                                                                                                    | 하자보수<br>보증기간 |  | 계약방법  |  |
|                                                                                                                                                                                                                                    | 하자보수<br>잔여기간 |  |       |  |
|                                                                                                                                                                                                                                    | 낙 찰 룰        |  | 계 약 자 |  |
| 금차공사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
|                                                                                                                                                                                                                                    | 추정금액         |  | 공사기간  |  |
|                                                                                                                                                                                                                                    | 추정가격         |  |       |  |
| 수의계약<br>요청사유                                                                                                                                                                                                                       |              |  |       |  |
| 사실상 입찰<br>이 불가능한<br>사유                                                                                                                                                                                                             |              |  |       |  |
| <p>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p> <p>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 &lt;별지 3&gt;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      |      |        |    |
|---------------|------|------|--------|----|
| 공사명(계약명)      | 계약금액 | 업종구분 | 계약이행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절 통 칙

####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 제조· 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

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 1. 공동수급체의 구성

#### 가. 자격요건

-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시공실적

- (1)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 (3) 혼합방식(공동 +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나. 구성원 수

-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

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 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 ~~내~~ 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분담 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5) “ 4)” 에서 “ 특별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대~~ 안전공사와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다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다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 1. 입찰공고

-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

에 명시해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捺인하게 해야 한다.

##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비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

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 5. 공동수급체의 책임

###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나.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다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6. 시공관리

###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
-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 7. 대가의 지급

### 가. 대가 신청방법

-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2) 준공대가 다이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기본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 2) “ 1)” 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나. 구성원의 변경

-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 2) “ 1)” 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기본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 계약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 2) 구성원별 투입 인원· 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내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 나” 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 2) 출자비율 내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별첨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인장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인장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외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

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인장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구성원<br>업종 | 합 계  | A 사          | B 사          | C 사           | D 사           | E 사           |
|-----------|------|--------------|--------------|---------------|---------------|---------------|
| 합 계       | 100% | 40%          | 40%          | 10%           | 5%            | 5%            |
| 토 목       | 40%  | 20%<br>(50%) | 20%<br>(50%) |               |               |               |
| 건 축       | 40%  | 20%<br>(50%) | 20%<br>(50%) |               |               |               |
| 조 경       | 10%  |              |              | 10%<br>(100%) |               |               |
| 통 신       | 5%   |              |              |               | 2.5%<br>(50%) | 2.5%<br>(50%) |
| 소 방       | 5%   |              |              |               | 2.5%<br>(50%) | 2.5%<br>(50%)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ㄷ외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ㄷ외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ㄷ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ㄷ해산 ㄷ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ㄷ해산 ㄷ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 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 공동계약 관련 유효 여부 판단 기준

## 혼합방식 공동계약 관련 유효 여부 판단

(행안부 유권해석, 회계공기업과-7652, 2010.12.1)

| 구분                                  | 질의                                                                                                                                                                                                                                                                                                                                        |           |      |                          |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2개사가 균등 또는 각각 공종에 비율을 달리하여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r><tr><td>A</td><td>70% (90%)</td><td>70% (50%)</td></tr><tr><td>B</td><td>30% (10%)</td><td>30% (50%)</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A    | 70% (90%) | 70% (50%) | B    | 30% (10%) | 30% (50%) | ○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br><b>유효</b> |   |     |                                             |  |     |      |                                                                 |     |     |      |                                                                 |  |     |     |  |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70% (90%)                                                                                                                                                                                                                                                                                                                                 | 70%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30% (10%)                                                                                                                                                                                                                                                                                                                                 | 30%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3개사가 2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r><tr><td>A</td><td>70%</td><td></td></tr><tr><td>B</td><td>30%</td><td>70%</td></tr><tr><td>C</td><td></td><td>30%</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A    | 70%       |           | B    | 30%       | 70%       | C                          |   | 30% | ○ B업체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b>무효</b> |  |     |      |                                                                 |     |     |      |                                                                 |  |     |     |  |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30%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가 공종에 단독 참여하고 나 공종에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r><tr><td>A</td><td>100%</td><td>50%</td></tr><tr><td>B</td><td></td><td>30%</td></tr><tr><td>C</td><td></td><td>20%</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A    | 100%      | 50%       | B    |           | 30%       | C                          |   | 20% | ○ A업체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b>무효</b> |  |     |      |                                                                 |     |     |      |                                                                 |  |     |     |  |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100%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h>다 공종</th></tr><tr><td>A</td><td>100%</td><td>100%</td><td></td></tr><tr><td>B</td><td></td><td></td><td>60%</td></tr><tr><td>C</td><td></td><td></td><td>40%</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A         | 100%      | 100% |           | B         |                            |   | 60% | C                                           |  |     | 40%  | ○ 가다 공동이행, 다 분담이행 또는 가다 분담이행, 다 공동이행인 경우 중복된 업체가 없으므로 <b>유효</b> |     |     |      |                                                                 |  |     |     |  |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10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h>다 공종</th></tr><tr><td>A</td><td>50%</td><td></td><td></td></tr><tr><td>B</td><td>50%</td><td></td><td></td></tr><tr><td>C</td><td></td><td>50%</td><td>50%</td></tr><tr><td>D</td><td></td><td>50%</td><td>50%</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A         | 50%       |      |           | B         | 50%                        |   |     | C                                           |  | 50% | 50%  | D                                                               |     | 50% | 50%  | ○ 가 공동이행, 나다 분담이행 또는 가 분담이행, 나다 공동이행인 경우 중복된 업체가 없으므로 <b>유효</b> |  |     |     |  |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50%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                                                                                                                                                                                                                                                                                                                                           | 50%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h>다 공종</th></tr><tr><td>A</td><td>50%</td><td></td><td></td></tr><tr><td>B</td><td>50%</td><td></td><td></td></tr><tr><td>C</td><td></td><td>50%</td><td>100%</td></tr><tr><td>D</td><td></td><td>50%</td><td></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A         | 50%       |      |           | B         | 50%                        |   |     | C                                           |  | 50% | 100% | D                                                               |     | 50% |      | ○ C업체가 중복 참여하였으므로 <b>무효</b>                                     |  |     |     |  |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5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가, 나, 다, 라 공사의 4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table><tr><th>업체</th><th>가 공종</th><th>나 공종</th><th>다 공종</th><th>라 공종</th></tr><tr><td>A</td><td>50%</td><td></td><td></td><td></td></tr><tr><td>B</td><td>50%</td><td></td><td></td><td></td></tr><tr><td>C</td><td></td><td>50%</td><td>50%</td><td>100%</td></tr><tr><td>D</td><td></td><td>50%</td><td>50%</td><td></td></tr></table>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라 공종      | A         | 50%  |           |           |                            | B | 50% |                                             |  |     | C    |                                                                 | 50% | 50% | 100% | D                                                               |  | 50% | 50% |  | ○ C업체가 중복 참여하였으므로 <b>무효</b> |  |  |
| 업체                                  | 가 공종                                                                                                                                                                                                                                                                                                                                      | 나 공종      | 다 공종 | 라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50%       | 5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                                                                                                                                                                                                                                                                                                                                           | 50%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혼합방식을 허용(의무는 아님)한 경우 단독입찰로 참여한 경우 |                                                                                                                                                                                                                                                                                                                                           |           |      | ○ 단독입찰을 허용하였다면 <b>유효</b>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 39 호 ]  
[ ( 2016. 01. 19.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 || 목 차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제9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부 칙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절 그 밖의 사항

별표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1절 통 칙

####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대상

#####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 나. 공사

1)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 1>과 <별표 2>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 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계획서와 그 밖의 참고자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심의 ·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1-나”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의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 “가”에 따른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의 전문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심의대상이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공사 등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의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로 선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6) 제안서의 제출기간
- 7) 제안서의 내용
-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과업내용
- 2) 요구사항
- 3) 계약조건
-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5) 제안서의 규격
-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바. “마”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사. 평가요령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

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다. 협상기간

-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협상결과 통보

-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용 제외)

가. 시행령 제43조 제12항에 따라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중 설계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한다.
-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한다.
-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한다.
-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한다.
-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20분의 5를 지급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바. “마”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계약 체결과 이행

-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공사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1. 위원회 구성

-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사.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 평가결과의 공개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lt;별표 1&gt;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구 분            |                        |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               |                                                                                                                                                      | 100  |                                                                                                                       |
| 기술<br>능력<br>평가 | 정 량 적<br>평가분야<br>(계량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경험(실적)</li> <li>▪ 경영상태</li> <li>▪ 기술인력 보유상태</li> <li>▪ 신인도</li> <li>▪ 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li> <li>▪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
|                | 정성적<br>평가<br>분야        | 용역<br>·<br>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상호협력 관계</li> <li>▪ 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 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이 평가</li> </ul>                                                          |
|                |                        | 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이해도</li> <li>▪ 마스터플랜 반영도</li> <li>▪ 지역경관과의 조화성</li> <li>▪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li> <li>▪ 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      |                                                                                                                       |
| 가격<br>평가       | 입찰가격<br>평가분야           |               |                                                                                                                                                      | 20   | ※ 평점산식 : 아래                                                                                                           |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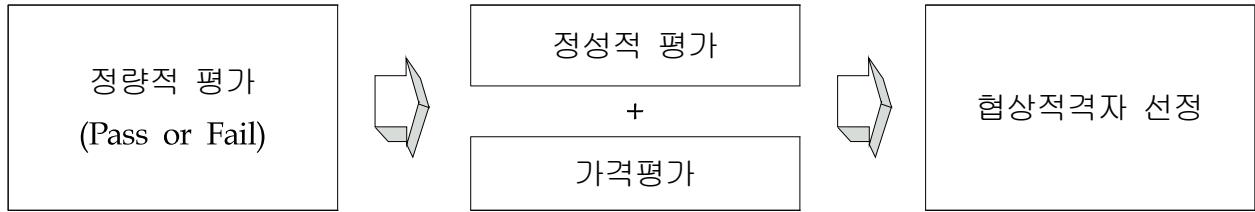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별표 2>

###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절차



#### □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분야    |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경험(실적)</li> <li>기술인력 보유</li> <li>경영상태</li> <li>신인도</li> <li>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 Pass or Fail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지식능력</li> <li>사업수행계획</li> <li>지원기술·사후관리</li> <li>상호협력 관계</li> <li>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 80           |
|       |         | 공사<br>(용역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이해도</li> <li>마스터플랜 반영도</li> <li>지역경관과의 조화성</li> <li>설계 우수성 · 창의성</li> <li>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              |
|       | 입찰가격 평가 |              |                                                                                                                                           | 20           |
|       | 계       |              |                                                                                                                                           | 100          |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절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                                                                                                                               |                                                              |          |  |
|-------------------------------------------------------------------------------------------------------------------------------|--------------------------------------------------------------|----------|--|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                                                              |          |  |
| ①사 업 명                                                                                                                        |                                                              |          |  |
| ②담 당 자                                                                                                                        | 소속 : ○○시(군) ○○과(팀)<br>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          |  |
| ③사 업 기 간                                                                                                                      |                                                              | ④사업비(억원) |  |
| ⑤주요사업내용                                                                                                                       |                                                              |          |  |
| ⑥ 협상에 의한<br>계약 필요성<br>(사업부서)                                                                                                  |                                                              |          |  |
| ⑦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          |  |
| ⑧계 약 부 서<br>검 토 의 건                                                                                                           |                                                              |          |  |
| ⑨관련협회의견(공사<br>의 경우)                                                                                                           |                                                              |          |  |
|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br/><br/>           ○○○장         </div> |                                                              |          |  |

주) · ⑤ 주요 사업내용 :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별로 내용 별도 기재

- ⑦ 검토의견 : 계약부서에서 제1절 “2-나”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 별첨 사업비 내역서 : 제1절 “2-나-1)에 따른 해당공사비가 7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공개 및 보고양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대상사업 현황                                                                                                                |                 |               |       |      |
|---------------------------------------------------------------------------------------------------------------------------------------|-----------------|---------------|-------|------|
| 사업명                                                                                                                                   | 사 업 비<br>(사업기간) | 발주기관<br>(담당자) | 사업 내용 |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 장         </div> |                 |               |       |      |

주)

- 사업내용 :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별로 내용 별도 기재
- 심의결과 :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위원별 의견을** 요약 기술
- ※ **별첨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     |  |  |  |  |  |  |
|-----|--|--|--|--|--|--|
| 위원명 |  |  |  |  |  |  |
| 소 속 |  |  |  |  |  |  |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 평가위원명 | 업 체 별 평 점 |   |   |   |     |
|-------|-----------|---|---|---|-----|
|       | A         | B | C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별 표]

##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 제1절 통 칙

#### 1. 목적 및 적용대상

-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 2. 용어의 정의

-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마. “총 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1. 입찰공고

-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 1) 설계공모의 목적
  -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 3) 응모자격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6) 공모안의 심사방법
  - 7) 분야별 배점기준
  -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2. 등록

-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 3. 질의접수 및 회신

-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4. 공모안의 제출

-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5. 심사위원회의 개최

-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 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 6. 공모안의 평가

-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

실을 통지해야 한다.

-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를 지급
  -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 있는 자
-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

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4)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나”의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은 “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바. 심사위원장은 “라” 및 “마”의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배

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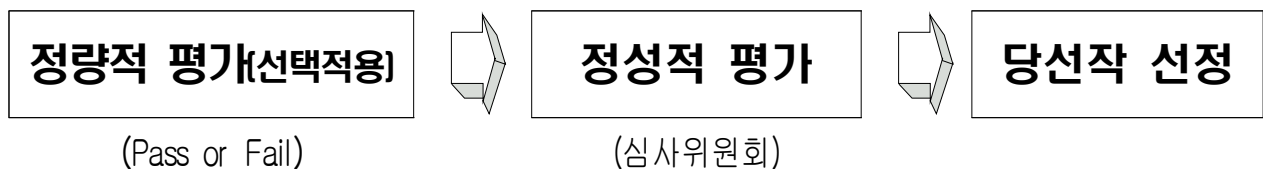
####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별표 1 >

###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절차



#### ☐ 평가항목

| 평가분야   |       | 평가 항목(예시)                                                                                                                                       |
|--------|-------|-------------------------------------------------------------------------------------------------------------------------------------------------|
| 정량적 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자 현황</li> <li>· 수행경험(실적)</li> <li>· 재무상태</li> <li>· 신인도 등</li> </ul>                               |
| 정성적 평가 | 공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li> <li>·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li> <li>· 주변경관과의 조화성</li> <li>· 수행방법 및 계획 등</li> </ul> |
|        | 물품 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li> <li>·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li> <li>· 수행방법 및 계획 등</li> </ul>                           |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해야 한다.

## &lt; 별지 제1호 서식 &gt;

| 응 모 신 청 서                                                                                                                                                                                                                                                                                                                                                                       |        |  |             |  |
|---------------------------------------------------------------------------------------------------------------------------------------------------------------------------------------------------------------------------------------------------------------------------------------------------------------------------------------------------------------------------------|--------|--|-------------|--|
| ※ 접수번호                                                                                                                                                                                                                                                                                                                                                                          |        |  |             |  |
| 대 표 자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                                                                                                                                                                                                                                                                                                                                                                                 | E-mail |  |             |  |
| 공동응모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 <p>(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p> <p>※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 [별첨 2] 의 공동수급협정서와 &lt;별지 제2호 서식&gt;을 첨부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p> <p>(발주기관의 장) 귀하</p> |        |  |             |  |

----- 절 취 선 -----

| 응모신청 접수증 |  |           |  |       |
|----------|--|-----------|--|-------|
| ※ 접수번호   |  |           |  | 접 수 인 |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
|          |  |           |  |       |

&lt; 별지 제2호 서식 &gt;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lt; 별지 제3호 서식 &gt;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         |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소속 :

직 위 :

성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lt; 별지 제5호 서식 &gt;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작 품 A | 작 품 B | 작 품 C | 작 품 D | ... |
|--------------------------|----|-------|-------|-------|-------|-----|
|                          |    |       |       |       |       |     |
| 합                      계 |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lt; 별지 제6호 서식 &gt;

##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 작품명  | 세부 평가 내용 |
|------|----------|
| 작품 A |          |
| 작품 B |          |
| 작품 C |          |
| 작품 D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7

##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제87조제5항 관련)

1. 용어의 뜻

"별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별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별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별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별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별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별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별점을 부과한다.

#### 4. 별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별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누계 평균별점       | 감점되는 점수(점) |
|---------------|------------|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 20점 이상        | 5          |

나. 누계 평균별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별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별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해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별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점은 승계된다.

#### 5. 별점의 측정기준

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별점                       |
|-----|-------------------------------------------------------------------------------------------------------------------------------------------------------------------------------------------------------------------------------------------------------------------------------------|--------------------------|
| 1.1 | ○ 토공사의 부실<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li> <li>-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li> </ul>                                                                                   | 2 또는 3<br><br>1          |
| 1.2 |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li> <li>-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li> </ul> | 3<br><br>1 또는 2<br><br>1 |
| 1.3 |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li> <li>-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 3<br><br>1               |
| 1.4 |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li> <li>-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li> <li>-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li> </ul>                                                                   | 3<br><br>2<br><br>1      |
| 1.5 | ○ 배수상태의 불량<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li> <li>-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li> <li>-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li> </ul>                                                                                     | 3<br><br>2<br><br>1      |
| 1.6 |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li> <li>-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li> </ul>                                                                                                                               | 3<br><br>1 또는 2          |
| 1.7 | ○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li> </ul>                                      | 2 또는 3<br><br>1          |
| 1.8 |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li> </ul>                                                                                                                                                                       | 2 또는 3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li> </ul>                                                                                                                                                                                                                       | 1                    |
|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li> <li>-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br>1      |
| 1.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li> <li>-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1 또는 2     |
| 1.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li> <li>-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br>1 또는 2 |
| 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li> <li>-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1 또는 2     |
| 1.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li> <li>- 시험실·장비나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li> <li>-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li> </ul> </li> </ul>                                 | 3<br><br>2<br>1      |
| 1.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li> <li>-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li> <li>-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li> </ul> </li> </ul>                                       | 3<br>2<br>1          |
| 1.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1 또는 2     |
| 1.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li> </ul> </li> </ul>                                                       | 2 또는 3               |

|      |                                                                                                                                                                                |                       |
|------|--------------------------------------------------------------------------------------------------------------------------------------------------------------------------------|-----------------------|
|      | 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br>-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합사항을 방치한 경우                                                                                                                     | 1 또는 2                |
| 1.17 |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br>-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br>-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br>-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 2 또는 3<br>1 또는 2<br>1 |
| 1.18 |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br>-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br>-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br>-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3<br>2<br>1           |
| 1.19 | ○ 계측관리의 불량<br>-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br>-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br>-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 3<br>2<br>1           |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 번호  | 주요 부실내용                                                                                                                                                                                                                  | 별점          |
|-----|--------------------------------------------------------------------------------------------------------------------------------------------------------------------------------------------------------------------------|-------------|
| 2.1 |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br>-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br>-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br>-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br>2<br>1 |
| 2.2 |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br>-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br>-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또는 3<br>1 |
| 2.3 |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br>-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br>-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br>-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br>2<br>1 |
| 2.4 |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br>-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                                                                                                                 | 3           |

|      |                                                                                                                                                                                                                                                                                                                                                                                                                                                                                                |                      |
|------|------------------------------------------------------------------------------------------------------------------------------------------------------------------------------------------------------------------------------------------------------------------------------------------------------------------------------------------------------------------------------------------------------------------------------------------------------------------------------------------------|----------------------|
|      | <p>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 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li> </ul>                                                                                                                                                                                                                                                                                                                                                 | 2                    |
| 2.5  | <p>○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의 확인을 잘못하여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li> <li>-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li> </ul>                                                                                                                                                                                                                                                                               | 3<br><br>2<br>1      |
| 2.6  | <p>○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li> <li>-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ul>                                                                                                                                                                                                                                                                                                  | 2 또는 3<br><br>1 또는 2 |
| 2.7  | <p>○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중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 3<br><br>2<br><br>1  |
| 2.8  | <p>○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li> <li>-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li> </ul>                                                                                                                                                                                                                                                                                                                                                   | 2<br>1               |
| 2.9  | <p>○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li> <li>-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li> <li>-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li> </ul>                                                                                                                                                                                                                                                                             | 3<br><br>2<br>1      |
| 2.10 | <p>○ 기록유지 및 보고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li> </ul>                                                                                                                                                                                                                                                                                                                                            | 1 또는 2               |
| 2.11 | <p>○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자만 해당한다)</li> </ul>                                                                                                                                                                                                                                                                                                           | 2 또는 3<br><br>1 또는 2 |
| 2.12 | <p>○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p>                                                                                                                                                                                                                                                                                                                                                                                                                                                  |                      |

|      |                                                                                                                                                                                                                                                                                                                                                                                                                                 |                                 |
|------|---------------------------------------------------------------------------------------------------------------------------------------------------------------------------------------------------------------------------------------------------------------------------------------------------------------------------------------------------------------------------------------------------------------------------------|---------------------------------|
|      | <p>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li> </ul>                                                                                                               | <p>2 또는 3</p> <p>1 또는 2</p>     |
| 2.13 | <p>○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 <p>2 또는 3</p> <p>1 또는 2</p>     |
| 2.14 | <p>○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p>                                                                                                                                                                                                                                                                                                                                              | <p>1 또는 2</p>                   |
| 2.15 | <p>○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p>                                                                                                                                                                                                                                                                                                                                                                           | <p>2 또는 3</p>                   |
| 2.16 | <p>○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li> <li>- 기술지원기술자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한 경우</li> </ul>                                                                             | <p>2</p> <p>1</p>               |
| 2.17 | <p>○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li> <li>-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li> </ul> | <p>3</p> <p>1 또는 2</p>          |
| 2.18 | <p>○ 하도급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li> <li>-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li> <li>-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li> </ul>                                                                                                                                                                                                       | <p>3</p> <p>2 또는 3</p> <p>1</p> |

##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번호  | 주요 부실내용                                                                                                                                                                                                                                                                                              | 벌점          |
|-----|------------------------------------------------------------------------------------------------------------------------------------------------------------------------------------------------------------------------------------------------------------------------------------------------------|-------------|
| 3.1 |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li> <li>-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li> <li>-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li> </ul>                                         | 3<br>2<br>1 |
| 3.2 | ○ 토질·기초조사의 잘못<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li> </ul>                                                                                                     | 3<br>2<br>1 |
| 3.3 |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li> <li>-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li> <li>-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li> </ul>                                                                                                                                    | 3<br>2<br>1 |
| 3.4 | ○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li> <li>-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li> <li>-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li> </ul>                                                                                       | 3<br>2<br>1 |
| 3.5 | ○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li> <li>-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li> <li>-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li> </ul>                                                                                   | 3<br>2<br>1 |
| 3.6 |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li> <li>-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li> <li>-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li> </ul> | 3<br>2<br>1 |
| 3.7 |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li> </ul>                                                                                                                                                                           | 1 또는 3      |
| 3.8 | ○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예정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li> <li>-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ul>                                                                                                   | 3<br>1 또는 2 |

|      |                                                                                                                                                                                                                                                                                                                                                                                                                                 |                  |
|------|---------------------------------------------------------------------------------------------------------------------------------------------------------------------------------------------------------------------------------------------------------------------------------------------------------------------------------------------------------------------------------------------------------------------------------|------------------|
| 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 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업자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1 또는 2 |
| 3.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li> <li>-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1 또는 2 |
| 3.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li> </ul>                                                                                                                                                                                                                                  | 2 또는 3<br>1 또는 2 |
| 3.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li> <li>-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li> </ul> </li> </ul>                                                                                                                                                                                                    | 3<br>1 또는 2      |
| 3.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li> <li>-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li> <li>-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li> </ul> </li> </ul>                                                                                                                                                         | 3<br>2<br>1      |

##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별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제5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 별표 4호]
2.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 1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9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5-471호, 201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기술자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60<br>[25]<br>(21-2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5<br>(11-13)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
|          | (다) 교육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br>-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br>-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5]<br>(23-24)       |                                                                                                                                                                                                                                            |
|          | (가) 해당분야          | 1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평가<br>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경력              | (13-14)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 (나) 직무분야<br>실적  | 9       |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
|          | (다) 교육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br>-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br>-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br><br>※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3) 기술지원<br>기술자 | [10]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          | (가) 등급          | 3       | ○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해당분야<br>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br>-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br>-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br><br>※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발표)      | (3~6)   | ○ 면접은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자가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br>-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문</th><th colspan="3">용역비</th></tr> <tr> <th>20억원 미만</th><th>20억원 이상<br/>30억원 미만</th><th>30억원 이상</th></tr> <tr> <td>책임건설사업<br/>관리기술자</td><td>2점</td><td>3점</td><td>4점</td></tr> <tr> <td>분야별건설사업<br/>관리기술자</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able> <p>※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p>                                                                                                                                                                                                        | 구문 | 용역비 |  |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br>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br>관리기술자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br>관리기술자 | 1점 | 1.5점 | 2점 |
| 구문               |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br>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책임건설사업<br>관리기술자  | 2점                   | 3점                 | 4점                                                                                                                                                                                                                                                                                                                                                                                                                                                                                                                                                                                                         |    |     |  |  |         |                    |         |                 |    |    |    |                  |    |      |    |
| 분야별건설사업<br>관리기술자 | 1점                   | 1.5점               | 2점                                                                                                                                                                                                                                                                                                                                                                                                                                                                                                                                                                                                         |    |     |  |  |         |                    |         |                 |    |    |    |                  |    |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 10                 | <p>○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p> <p>○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br/>+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br/>+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 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p> <p>※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p> <p>※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p> |    |     |  |  |         |                    |         |                 |    |    |    |                  |    |      |    |
| 다. 신 용 도         | (1)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 정지 | 15<br>[7]          | <p>○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p>○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    |     |  |  |         |                    |         |                 |    |    |    |                  |    |      |    |
|                  | (2) 벌점               | [5]                | <p>○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p>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정상태<br>건실도 | [3]            | <p>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p> <p>&lt;신용평가등급 기준&gt;</p> <table><tr><td>회사채</td><td>A-이상</td><td>A-미만<br/>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2-이상</td><td>A2-미만<br/>A3-이상</td><td>A3-미만<br/>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A-이상</td><td>A-미만<br/>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0</td></tr></table> <p>※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p>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        |     |      |       |                |               |     |     |      |      |                |                |        |     |    |     |     |     |     |   |
| 라.<br>기술<br>개발<br>및<br>투자<br>실적 | (1) 개발·활용<br>실적 | 10<br>[3]      |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p>○ 개발실적</p> <p>-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p> <p>○ 활용실적</p> <p>-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p> <p>-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p>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br>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p>○ 기준점수</p>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1.0점/건당</td></tr><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table> <p>○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p>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tr><td>실적건수<br/>(건)</td><td>5이상</td><td>5미만<br/>4이상</td><td>4미만<br/>3이상</td><td>3미만<br/>2이상</td><td>2미만<br/>1이상</td></tr><tr><td>실적금액<br/>(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br/>18이상</td><td>18미만<br/>16이상</td><td>16미만<br/>14이상</td><td>14미만<br/>12이상</td></tr></table>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p>○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p> <table><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br/>10년미만</th><th>10년이상<br/>20년미만</th></tr><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table>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 구 분              |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1.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구 분 | 가 중 치 |     |  |  |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br>(건) | 5이상 | 5미만<br>4이상 | 4미만<br>3이상 | 3미만<br>2이상 | 2미만<br>1이상 | 실적금액<br>(억원) | 20이상 | 20미만<br>18이상 | 18미만<br>16이상 | 16미만<br>14이상 | 14미만<br>12이상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br>10년미만 | 10년이상<br>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 기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1.0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가 중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0.9              | 0.8                                                                                                                                                                                                                                                                                                                                                                                                                                                                                                                                                                                                                                                                                                                                                                                                                                                                                                                                                                                                                                                                                                                            | 0.7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건수<br>(건)  | 5이상                | 5미만<br>4이상       | 4미만<br>3이상                                                                                                                                                                                                                                                                                                                                                                                                                                                                                                                                                                                                                                                                                                                                                                                                                                                                                                                                                                                                                                                                                                                     | 3미만<br>2이상       | 2미만<br>1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금액<br>(억원) | 20이상               | 20미만<br>18이상     | 18미만<br>16이상                                                                                                                                                                                                                                                                                                                                                                                                                                                                                                                                                                                                                                                                                                                                                                                                                                                                                                                                                                                                                                                                                                                   | 16미만<br>14이상     | 14미만<br>12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br>10년미만    | 10년이상<br>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률          | 100%               | 8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투자실적           | [7]              |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table><tr><th>구분</th><th>3%이상</th><th>3.0%미만<br/>2.5%이상</th><th>2.5%미만<br/>2.0%이상</th><th>2.0%미만<br/>1.5%이상</th><th>1.5%미만<br/>1.0%이상</th><th>1%미만</th></tr><tr><th>점수</th><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 구분               | 3%이상             | 3.0%미만<br>2.5%이상 | 2.5%미만<br>2.0%이상 | 2.0%미만<br>1.5%이상 | 1.5%미만<br>1.0%이상 | 1%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3%이상               | 3.0%미만<br>2.5%이상 | 2.5%미만<br>2.0%이상                                                                                                                                                                                                                                                                                                                                                                                                                                                                                                                                                                                                                                                                                                                                                                                                                                                                                                                                                                                                                                                                                                               | 2.0%미만<br>1.5%이상 | 1.5%미만<br>1.0%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br>체<br>빈  | (1) 건설사업관리<br>용역업자 | 5<br><br>[3]     | <p>○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p> <p>○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br>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도        | (2) 참여기술자 | [2] |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                |       |
|          |           |     | 교체빈도율<br>(%)                                                                                           | 5%미만 | 5%이상<br>10%미만 | 10%이상<br>15%미만 | 15%이상<br>20%미만 | 20%이상 |
|          |           |     | 점 수                                                                                                    | 3    | 2.5           | 2              | 1              | 0     |
|          |           |     | ○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영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                |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br>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     |      |         |                   |                  |      |         |                    |                    |
|----------|-----------------|-----------------------------------------------------------------------------------------------------------------------------------------------------------------------------------------------------------------------------------------------------------------------------------------------------------------------------------------------------------------------------------------------------------------------------------------------------------------------------------------------------------------------------------------------------------------------------------------------------------------------------------------------------------------------------------------------------------------------------------------------------------------------------------------------------|--------------------|-----|-----|-----|------|---------|-------------------|------------------|------|---------|--------------------|--------------------|
| 가점       | 공사비절감<br>기여 기술자 | <p>○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li><li>-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li></ul> <p>&lt;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gt;</p> <table><tr><th>가중치</th><th>1.0</th><th>0.8</th><th>0.5</th></tr><tr><th>절감금액</th><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br/>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br/>1억원 이상</td></tr><tr><th>절감비율</th><td>1.0% 이상</td><td>1.0% 미만<br/>0.5% 이상</td><td>0.5% 미만<br/>0.1% 이상</td></tr></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p> <p>*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p> <p>*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p> <p>*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p> <p>*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p> <p>*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br>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br>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br>0.5% 이상 | 0.5% 미만<br>0.1% 이상 |
|          | 가중치             | 1.0                                                                                                                                                                                                                                                                                                                                                                                                                                                                                                                                                                                                                                                                                                                                                                                                 | 0.8                | 0.5 |     |     |      |         |                   |                  |      |         |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br>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br>1억원 이상   |     |     |     |      |         |                   |                  |      |         |                    |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br>0.5% 이상                                                                                                                                                                                                                                                                                                                                                                                                                                                                                                                                                                                                                                                                                                                                                                                  | 0.5% 미만<br>0.1% 이상 |     |     |     |      |         |                   |                  |      |         |                    |                    |
|          | 건설기술자 신규<br>고용  | <p>○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 이상 : 0.1점</li><li>· 2% 이상 : 0.2점</li><li>· 3% 이상 : 0.3점</li></ul> <p>-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p>                                                                                                                                                                                                                                                                                                                                                                                                                                                                                                                                                                           |                    |     |     |     |      |         |                   |                  |      |         |                    |                    |

| 평가<br>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li> </ul>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li> <li>○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li>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li>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li> </ul> </li> </ul> <p>&lt;부패행위&gt;<br/>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br/>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p> |

※ 비교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 2]에 따른다.

**[부 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I. 일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자가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

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를 20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시공단계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3) 기술지원기술자는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자 중 해당 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 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text{억원} \times 0.6) + (100\text{억원} \times 0.4) = 160\text{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  
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  
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  
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

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자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

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자가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자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 · 날인)

## &lt;첨부 1&gt;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 업체수 | 등 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      |      |      |      |

## &lt;첨부 2&gt;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br>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br>등급)           |
| BB-               | B0                | 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br>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lt;첨부 3&gt;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                                    |                                                                                                     |      |      |          |                  |               |    |
|---------------------------------------------------------------------------------------------------------------------------------------------------------------------------------------------------------------------------------------------------------------|------------------------------------|-----------------------------------------------------------------------------------------------------|------|------|----------|------------------|---------------|----|
| <b>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b>                                                                                                                                                                                                                                         |                                    |                                                                                                     |      |      |          |                  |               |    |
| 1)용역명                                                                                                                                                                                                                                                         |                                    |                                                                                                     |      |      | 3)발주기관   |                  |               |    |
| 2)공사현장<br>위치                                                                                                                                                                                                                                                  |                                    |                                                                                                     |      |      | (발주청)    |                  |               |    |
| 4)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      |          |                  |               |    |
|                                                                                                                                                                                                                                                               | 4-2)총공사비                           |                                                                                                     |      |      |          |                  |               |    |
| 5)건설사업<br>관리용역<br>업자<br>(대표사)                                                                                                                                                                                                                                 | 5-1)회 사 명                          |                                                                                                     |      |      | 5-3)대표자  |                  |               |    |
|                                                                                                                                                                                                                                                               | 5-2)등록번호                           |                                                                                                     |      |      | 5-4)전화번호 |                  |               |    |
| 6)용역기간                                                                                                                                                                                                                                                        | 20 . . . ~ 20 . . .                |                                                                                                     |      |      |          |                  |               |    |
| 7)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      |      |          |                  |               |    |
| <b>II.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b>                                                                                                                                                                                                                                       |                                    | ※ 공사비 절감기술자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               |    |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br>여부 | 절감<br>기여율<br>(%) | 절감금액<br>(백만원) | 비고 |
| 합 계                                                                                                                                                                                                                                                           | 인                                  |                                                                                                     |      |      |          | 100              |               |    |
| 1)책임                                                                                                                                                                                                                                                          |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II. 공사비절감 인정일</b>                                                                                                                                                                                                                                         |                                    | 년 월 일                                                                                               |      |      |          |                  |               |    |
| <p>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발 주 기 관 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 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span></p> |                                    |                                                                                                     |      |      |          |                  |               |    |

## 2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4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용역은 제외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 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기본업무”란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7.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8. “보정계수”란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건설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한다.
9.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공단

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통합 건설사업관리”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0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직선거리로 20km이내)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해당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5.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며 시공단계의 기술자수는 기술지원기술자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에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배치되는 기술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③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기술자 중 1명을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

사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7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자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2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5. 2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감리원의 노임가격은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으로 본다.

제4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및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4호)”은 폐지한다.

[별표 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방법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한다.
-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20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

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공사비(억원)            | 50 이하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이상 |
|--------------------|-------|----|-----|-----|-----|-----|-----|-----|-----|----------|
| 평균건설사업<br>관리기간(개월)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마.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자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기술지원기술자(시공단계에 한정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토목공사

|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 해당 공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li> <li>- 하천제방, 호안, 하도</li> <li>-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li> <li>- 상·하수관거</li> <li>- 우수구거</li> <li>- 포장보수</li> <li>- 준설 및 매립</li> <li>- 보통 조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li> <li>- 600mm이상 하수관거</li> <li>- 400mm이상 상수관거</li> <li>-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li> <li>- 하수도 및 수로터널</li> <li>-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li> <li>- 공항활주로</li> <li>- 하천수문 및 통문</li> <li>- 대형 조경구조물</li> <li>-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li> <li>-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li> <li>-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li> <li>- 하구언, 갑문, 댐</li> <li>-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li> <li>- 배수 및 양수펌프장</li> <li>-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li> <li>- 대형구조물 기초공사</li> <li>- 대형구조물 개축</li> <li>- 수중 구조물</li> </ul> |

## 2)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에 의함)

|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 해당 공종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자동차 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li> <li>- 제1,2종 근린생활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방송통신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의료시설</li> <li>- 자원순환 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 (관망탑에 한함)</li> <li>- 운수시설</li> </ul> |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 가.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br>이<br>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고급             | a    | b | c |             |
| 공통     | 과업 착수준비 | 식              | 7.0            |      |   |   |             |

| 업무분류체계         |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br>이<br>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 a    | b | c |             |
| 업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식              | 20.5           |      |   |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식              | 27.3           |      |   |   |             |
|                | 직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 |          | 식              | 22.3           |      |   |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 운영<br>일수       | 0.3            | ○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 식              | 31.0           |      |   |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 2)시공이후 단계      |                              | 54.6     |                |                |      |   |   |             |
| 설계전<br>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 식              | 43.7           |      |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6           |      |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3           |      |   |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 식              | 31.0           |      |   |   |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 식              | 18.0           |      |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          | 식              | 11.4           |      |   |   |             |
| 기본<br>설계<br>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7.1           |      |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3.2            |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 식              | 22.5           |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90.6           |      |   |   |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5.7            |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 회              | 3.7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6.8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2.5            |      |   |   |             |
| 실시<br>설계<br>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3.9           |      |   |   |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5.9            |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 식              | 23.3           |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123.3          |      |   |   |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10.5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 회              | 8.1            |      |   |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 식              | 10.2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8.3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6.4            |      |   |   |             |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 식              | 16.9           |      |   |   |             |
| 구매<br>조달       | 입찰업무지원                       |          | 식              | 37.7           |      |   |   |             |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br>이<br>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a    | b | c |             |
| 단계        | 계약업무지원                    | 식              | 27.5           |      |   |   |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br>개월       | 0.6            |      |   |   |             |
| 시공<br>단계  | 공사착수                      | 식              | 107.7          |      |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br>일수       | 2.2            | ○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br>개월       | 1.8            |      |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br>개월       | 11.0           |      | ○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br>개월       | 6.4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br>개월       | 5.0            |      | ○ |   | ○           |
|           | 공정관리                      | 공사<br>개월       | 8.2            |      |   |   | ○           |
|           | 안전관리                      | 공사<br>개월       | 10.5           |      | ○ | ○ | ○           |
|           | 환경관리                      | 공사<br>개월       | 2.6            |      |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br>개월       | 13.4           |      |   |   | ○           |
|           | 기성검사                      | 회              | 5.2            |      |   |   |             |
|           | 준공검사                      | 식              | 6.0            |      |   |   |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br>개월       | 1.5            |      |   |   |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br>년수       | 6.9            |      |   |   |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br>일수       | 0.8            |      |   |   | ○           |
| 시공후<br>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br>시운전 확인   | 1)도로, 하천       | 23.3           |      |   |   |             |
|           |                           | 2)철도           | 46.6           | ○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4           |      |   |   |             |

## 2) 보정계수

|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
| 도로       | a. 도로등급 | ①일반국도 : 1.0 ②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br>(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
|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 철도<br>노반 | a. 철도유형 | ①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일반철도(단선) : 0.8 |
|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개량 : 1.2                                                               |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철도<br>궤도 | a. 철도유형 | ①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일반철도(단선) : 0.8 |
|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개량 : 1.2 ③개량(운행선차단) : 1.3                                              |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하천       | a. 하천등급 | ①국가하천 : 1.0 ②지방하천(소하천포함) : 1.1                                                    |
|          | b. 사업유형 | ①하천개수사업 : 1.0 ②생태하천사업 : 1.1                                                       |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2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 3) 공사난이도

| 구분                                      |            | 산식                                                                                                                                                                                               |
|-----------------------------------------|------------|--------------------------------------------------------------------------------------------------------------------------------------------------------------------------------------------------|
| 시공<br>단계<br>(총공사<br>비<br>2,000억<br>원이하) | 도로         | · 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 \times \text{구조물비중}) + 0.2$<br>(※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
|                                         | 철도<br>(노반) | · 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2 \times \text{구조물비중}) + 0.2$<br>(※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
|                                         | 철도<br>(궤도) | · 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4 \times \text{콘크리트궤도비중}) + 0.2$<br>(※ 콘크리트궤도비중 = 콘크리트궤도연장 / 총궤도연장)                        |
|                                         | 하천         | · 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 \times \text{구조물비중}) + 0.2$<br>(※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
| 시공전 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 · 공사난이도 = $0.015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11 \times \text{총공사비})$                                                                                                                      |
| 총공사비<br>2,000억원 초과                      |            |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 $\{(\text{총공사비} - 200) / 250\}$                                                                                                                                 |
| 비 고                                     |            |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br>·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text{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text{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text{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times 0.1$<br>※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 나.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분야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업무분류체계                     |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br>원수(인<br>·일) | 보정계수 |   |   |    |   |   |   |   |   |    |   |   | 난<br>이<br>도 |
|----------------------------|-------------------------------------|----------|----------------|--------------------|------|---|---|----|---|---|---|---|---|----|---|---|-------------|
| 단<br>계                     | 기본업무                                |          |                |                    | 항만   |   |   | 공항 |   |   | 댐 |   |   | 단지 |   |   |             |
|                            |                                     |          |                |                    | 고급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 FEA<br>해석<br>단<br>계        | 과업착수준비                              |          | 식              | 7.0                |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식              | 20.5               |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운영                  |          | 식              | 27.3               |      |   |   |    |   |   |   |   |   |    |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br>리, 사업정보축적 · 관리 |          | 식              | 22.3               |      |   |   |    |   |   |   |   |   |    |   |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운영<br>일수       | 0.3                | ○    |   |   | ○  |   |   |   |   | ○ |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 식              | 31.0               |      |   |   |    |   |   |   |   |   |    |   |   |             |
|                            | 최종 건설사업<br>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   |   |   |   |    |   |   |             |
| 2)시공이후 단계                  |                                     | 54.6     |                |                    |      |   |   |    |   |   |   |   |   |    |   |   |             |
| 설<br>계<br>전<br>단<br>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 식              | 43.7               |      |   |   |    |   |   |   |   |   |    |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6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3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 식              | 31.0               |      |   |   |    |   |   |   |   |   |    |   |   |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 식              | 18.0               |      |   |   |    |   |   |   |   |   |    |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중합예<br>산계획서)          |          | 식              | 11.4               |      |   |   |    |   |   |   |   |   |    |   |   |             |
| 기<br>본<br>설<br>계<br>단<br>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7.1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3.2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br>업무             |          | 식              | 22.5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90.6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감사관<br>리             |          | 회              | 3.7                | ○    |   |   | ○  |   | ○ | ○ |   | ○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6.8                |      |   |   |    |   | ○ |   |   | ○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2.5                |      |   |   |    |   |   |   |   |   |    |   |   |             |
| 실<br>시<br>설<br>계<br>단<br>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3.9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5.9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br>업무             |          | 식              | 23.3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123.3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감사관<br>리             |          | 회              | 8.1                | ○    |   |   | ○  |   | ○ | ○ |   | ○ |    |   |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 식              | 10.2               |      |   |   |    |   |   |   |   |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8.3                |      |   |   |    |   | ○ |   |   | ○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6.4                |      |   |   |    |   |   |   |   |   |    |   |   |             |

| 업무분류체계                     |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br>원수(인<br>·일) | 보정계수 |   |   |    |   |   |   |   |   |    |   |   | 난<br>이<br>도 |
|----------------------------|-------------------------------|--------------------|----------------|--------------------|------|---|---|----|---|---|---|---|---|----|---|---|-------------|
| 단<br>계                     | 기본업무                          |                    |                |                    | 항만   |   |   | 공항 |   |   | 댐 |   |   | 단지 |   |   |             |
|                            |                               |                    |                |                    | 고급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                            | 시공사 선정계획수립                    |                    | 식              | 16.9               |      |   |   |    |   |   |   |   |   |    |   |   |             |
| 구<br>매<br>조<br>달<br>단<br>계 | 입찰업무지원                        |                    | 식              | 37.7               |      |   |   |    |   |   |   |   |   |    |   |   |             |
|                            | 계약업무지원                        |                    | 식              | 27.5               |      |   |   |    |   |   |   |   |   |    |   |   |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 공사<br>개월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br>공<br>단<br>계           | 공사착수                          |                    | 식              | 110.1              |      | ○ |   |    | ○ | ○ |   | ○ |   |    |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공사<br>일수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공사<br>개월       | 1.8                |      |   |   |    |   |   |   |   |   |    |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공사<br>개월       |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계획검토                        |                    | 공사<br>개월       | 6.0                | ○    |   |   |    |   | ○ | ○ |   |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공사<br>개월       | 5.0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관리                          |                    | 공사<br>개월       | 5.5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                    | 공사<br>개월       | 10.9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관리                          |                    | 공사<br>개월       | 3.5                |      |   |   |    |   |   |   |   |   |    |   | ○ |             |
|                            | 설계변경 관리                       |                    | 공사<br>개월       | 13.4               |      |   |   |    |   |   |   |   |   |    |   | ○ |             |
|                            | 기성검사                          |                    | 회              | 5.2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식              | 6.1                |      |   |   |    |   |   |   |   |   |    |   |   |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공사<br>개월       | 1.5                |      |   |   |    |   |   |   |   |   |    |   |   |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 공사<br>년수       | 6.3                |      |   |   |    |   |   |   |   |   |    |   | ○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회              | 4.6                |      |   |   |    |   |   |   |   |   |    |   |   |             |
|                            | 일반행정업무                        |                    | 용역<br>일수       | 0.9                |      |   |   |    |   |   |   |   |   |    |   | ○ |             |
| 시<br>공<br>후<br>단<br>계      | 종합시운전계획의<br>검토 및 시운전 확<br>인   | 항만, 공항,<br>단지 등 기타 | 식              | 22.1               | ○    |   |   | ○  |   |   |   |   |   |    |   |   |             |
|                            |                               | 댐                  |                | 36.1               |      |   |   |    |   |   | ○ | ○ |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식              | 29.0               |      |   |   |    |   |   |   |   |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 식              | 20.8               |      |   |   |    |   |   |   |   |   |    |   |   |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br>관련업무 지원 |                    | 식              | 25.3               |      |   |   |    |   |   |   |   |   |    |   |   |             |

## 2) 보정계수

|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
| 항만      |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 ①준설및매립 : 0.7<br>②배후부지 : 0.9<br>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br>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br>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br>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
|         | b.지역          |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
|         | c.수심          |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
| 공항      | d.공항규모        | ①국내선 : 1.0 ②국제선(airside) : 1.1                                                                                                                                                                    |
|         | e.지역특성        | ①육상공항 : 1.0 ②해상공항 : 1.2                                                                                                                                                                           |
|         | f.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개량포함) : 1.1                                                                                                                                                                         |
| 댐       | g.댐형식         | ①필댐 : 0.9 ②CFRD : 1.0 ③콘크리트댐(복합댐) : 1.2 ④아치댐 : 1.4                                                                                                                                                |
|         | h.여수로형식       | ①무문식 : 0.9 ② 문비식 : 1.0                                                                                                                                                                            |
|         | i.발전시설용량      | ①없음 : 0.8 ②3,000kW이하 : 0.9 ③3,000kW~10,000kW이하 : 1.0<br>④10,000kW초과 : 1.2                                                                                                                         |
| 단지 등 기타 | j.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         | k.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 적용

## 3) 공사난이도

| 구분                          | 산식                                                                                                                                                                                                                                                                                                                                                                                                                                                                                                                                                                                                                        |
|-----------------------------|---------------------------------------------------------------------------------------------------------------------------------------------------------------------------------------------------------------------------------------------------------------------------------------------------------------------------------------------------------------------------------------------------------------------------------------------------------------------------------------------------------------------------------------------------------------------------------------------------------------------------|
| 시공 단계<br>(총공사비 2,000억 원이하)  | <div>항만, 단지 등기타</div> $\cdot \text{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 \times \text{구조물비중}) + 0.2$ <p>(※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p> <div>댐</div> $\cdot \text{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2 \times \text{부속구조물공사비중}) + 0.2$ <p>(※ 부속구조물공사비중 = 부속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p> <div>공항</div> $\cdot \text{공사난이도} = 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2 \times \text{콘크리트포장공사비중}) + 0.2$ <p>(※ 콘크리트포장공사비중 = 콘크리트포장공사비 / 총포장공사비)</p> |
| 시공전 단계<br>(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cdot \text{공사난이도} = 0.015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11 \times \text{총공사비})$                                                                                                                                                                                                                                                                                                                                                                                                                                                                                                                                    |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cdot \text{공사난이도} = \text{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 \{(\text{총공사비} - 200) / 250\}$                                                                                                                                                                                                                                                                                                                                                                                                                                                                                                                                        |
| 비고                          | <p>·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p> <p>·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math>\{(\text{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text{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text{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times 0.1</math></p> <p>※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p>                                                                                                                                                                                                                                                                                                                                                                                                |

## 다. 건축분야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업무분류체계         |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고급             | a    | b | c |     |
| 공통<br>업무       | 과업 착수준비                           |          | 식              | 7.0            |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식              | 20.5           |      |   |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식              | 27.3           |      |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br>업정보축적·관리 |          | 식              | 22.3           |      |   |   |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운영<br>일수       | 0.3            |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 식              | 31.0           |      | ○ |   |     |
|                | 최종 건설사업관<br>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 2)시공 이후 단계     |                                   | 54.6     |                |                |      |   |   |     |
| 설계<br>전<br>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 식              | 43.7           |      |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6           |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3           |      |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 식              | 31.0           |      |   |   |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 식              | 18.0           | ○    | ○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br>획서)        |          | 식              | 11.4           |      |   |   |     |
| 기본<br>설계<br>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7.1           |      |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8.4            |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 식              | 22.5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90.6           |      |   |   |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8.8            |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 회              | 3.7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6.8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2.5            |      |   |   |     |
| 실시<br>설계<br>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3.9           |      |   |   |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18.4           |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 식              | 23.3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123.3          |      |   |   |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18.9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 회              | 8.1            |      |   |   |     |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고급             | a    | b | c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   |     |
|                | 시공사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   |     |
| 구매<br>조달<br>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37.7           |      |   |   |     |
|                | 계약업무지원                         | 식              | 27.5           |      |   |   |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br>개월       | 0.6            | ○    |   | ○ |     |
| 시공<br>단계       | 공사착수                           | 식              | 72.7           |      |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br>일수       | 2.9            | ○    |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br>개월       | 10.0           | ○    | ○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br>개월       | 12.6           | ○    |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br>개월       | 8.8            |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br>개월       | 10.1           | ○    |   |   | ○   |
|                | 공정관리                           | 공사<br>개월       | 9.0            | ○    | ○ |   | ○   |
|                | 안전관리                           | 공사<br>개월       | 7.9            |      | ○ |   | ○   |
|                | 환경관리                           | 공사<br>개월       | 5.3            |      | ○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br>개월       | 7.5            |      |   | ○ | ○   |
|                | 기성검사                           | 회              | 6.6            |      |   |   |     |
|                | 준공검사                           | 식              | 3.8            |      |   |   |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br>개월       | 2.8            | ○    |   |   |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br>년수       | 23.0           |      |   |   |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36.4           |      |   |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br>일수       | 1.6            |      |   |   | ○   |
| 시공<br>후<br>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13.6           |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32.6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br>업무 지원 | 식              | 27.2           |      |   |   |     |

## 2) 보정계수

|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
| 건축 | a.건축용도    | ①단순공종 : 0.9 ②보통공종 : 1.0 ③복잡공종 : 1.1<br>(별표 1 제1호 사목2)에 따라 공종 구분) |
|    | b.공사성격    | ①신축 : 1.0 ②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 1.1 ③순환 리모델링 : 1.2                    |
|    | c.BIM적용여부 | ①미적용 : 1.0 ②적용 : 1.1                                             |

※ 여러 용도, 성격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 3) 공사난이도

| 구분                             | 난이도 산식                                                                                                                                                      |
|--------------------------------|-------------------------------------------------------------------------------------------------------------------------------------------------------------|
| 시공 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5*골조공사비 비중)+0.2<br>(※ 골조공사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
| 시공전 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총공사비)                                                                                                                         |
| 총공사비<br>2,000억원 초과             |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 비고                             |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br>·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br>※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 라. 플랜트 I (상하수도, 폐기물)분야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br>수(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고급   | a | b | c   |
| 공통<br>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식              | 31.5           |      |   |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식              | 140.9          |      |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식              | 30.6           |      |   |   |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br>일수       | 0.3            | ○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   |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 업무분류체계         |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br>수(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 고급   | a | b |     |
|                | 보고                     | 2)시공 이후 단계 |                | 54.6           |      |   |   |     |
| 설계<br>전<br>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 식              | 43.8           |      |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7           |      |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4           |      |   |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 식              | 31.1           |      |   |   |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 식              | 18.1           |      |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            | 식              | 11.7           |      |   |   |     |
| 기본<br>설계<br>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7.1           |      |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3.2            |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 식              | 22.5           |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90.6           |      |   |   |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5.7            |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 회              | 3.7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6.8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2.5            |      |   |   |     |
| 실시<br>설계<br>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 식              | 13.9           |      |   |   |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 용역<br>개월       | 5.9            |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 식              | 23.3           |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 식              | 123.3          |      |   |   |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 용역<br>개월       | 10.5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 회              | 8.1            |      |   |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 식              | 10.2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 식              | 8.3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 회              | 6.4            |      |   |   |     |
|                | 시공사 선정계획수립             |            | 식              | 16.9           |      |   |   |     |
| 구매<br>조달<br>단계 | 입찰업무지원                 |            | 식              | 63.3           |      |   |   |     |
|                | 계약업무지원                 |            | 식              | 48.5           |      |   |   |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 공사<br>개월       | 1.5            |      |   |   |     |
| 시공<br>단계       | 공사착수                   |            | 식              | 122.5          |      |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공사             | 2.1            | ○    | ○ |   | ○   |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br>수(인·일)<br>고급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a    | b | c |     |
|                       |                            | 일수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br>개월       | 6.2                  |      |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br>개월       | 12.0                 |      | ○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br>개월       | 6.9                  |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br>개월       | 11.7                 |      | ○ |   | ○   |
|                       | 공정관리                       | 공사<br>개월       | 12.8                 |      |   | ○ | ○   |
|                       | 안전관리                       | 공사<br>개월       | 19.7                 |      |   | ○ | ○   |
|                       | 환경관리                       | 공사<br>개월       | 3.3                  |      |   |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br>개월       | 14.0                 |      |   |   | ○   |
|                       | 기성검사                       | 회              | 5.4                  |      |   |   |     |
|                       | 준공검사                       | 식              | 6.1                  |      |   |   |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br>개월       | 1.5                  |      |   |   |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br>년수       | 6.9                  |      |   |   |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5.1                  |      |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br>일수       | 1.2                  |      |   |   | ○   |
| 시<br>공<br>후<br>단<br>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52.0                 |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8.0                 |      |   |   |     |

## 2) 보정계수

|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
| 플랜트<br>I | a.공사유형 |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br>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br>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br>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
|          | b.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
|          | c.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 3) 공사난이도

| 구분                             | 난이도 산식                                                                                                                                                                                                                |
|--------------------------------|-----------------------------------------------------------------------------------------------------------------------------------------------------------------------------------------------------------------------|
| 시공이후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기계설비공사비중)+0.2</li> <li>(※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li> </ul>                                                               |
| 시공전 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li> </ul>                                                                                                                                  |
| 총공사비<br>2,000억원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li> </ul>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li> <li>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li> <li>※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li> </ul> |

#### 마.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분야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업무분류체계        |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고급             | a    | b | c |     |
| 공통<br>업무      | 과업착수준비                             |           | 식              | 24.2           |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식              | 141.0          |      |   |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식              | 210.2          |      |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br>보충적·관리 |           | 식              | 83.0           |      |   |   |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운영<br>일수       | 0.3            | ○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 식              | 62.5           |      |   |   |     |
|               | 최종<br>보고                           | 1)시공 전 단계 | 식              | 27.3           |      |   |   |     |
| 2)시공 이후 단계    |                                    | 54.6      |                |                |      |   |   |     |
| 설계<br>전<br>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 식              | 43.8           |      |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7           |      |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4           |      |   |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 식              | 31.1           |      |   |   |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 식              | 18.1           |      |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               |           | 식              | 11.7           |      |   |   |     |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 a    | b | c |     |
|                | 서)                  |                |                |      |   |   |     |
| 기본<br>설계<br>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br>개월       | 3.2            |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br>개월       | 5.7            |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   |   |     |
| 실시<br>설계<br>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   |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br>개월       | 5.9            |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br>개월       | 10.5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   |     |
|                | 시공사 선정 계획수립         | 식              | 16.9           |      |   |   |     |
| 구매<br>조달<br>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63.3           |      |   |   |     |
|                | 계약업무지원              | 식              | 48.5           |      |   |   |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br>개월       | 1.5            |      |   |   |     |
| 시공<br>단계       | 공사착수                | 식              | 327.2          |      |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br>일수       | 2.3            | ○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br>개월       | 21.2           |      |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br>개월       | 9.0            |      | ○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br>개월       | 15.9           |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br>개월       | 18.6           |      | ○ |   | ○   |
|                | 공정관리                | 공사<br>개월       | 9.1            |      |   | ○ | ○   |
|                | 안전관리                | 공사<br>개월       | 10.6           |      |   | ○ | ○   |

| 업무분류체계        |                                | 적용<br>수량<br>단위 | 기준인원수<br>(인·일) | 보정계수 |   |   | 난이도 |
|---------------|--------------------------------|----------------|----------------|------|---|---|-----|
| 단계            | 기본업무                           |                | 고급             | a    | b | c |     |
|               | 환경관리                           | 공사<br>개월       | 9.4            |      |   |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br>개월       | 8.0            |      |   |   | ○   |
|               | 기성검사                           | 회              | 9.8            |      |   |   |     |
|               | 준공검사                           | 식              | 30.2           |      |   |   |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br>개월       | 30.9           |      |   |   |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br>년수       | 6.9            |      |   |   |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24.1           |      |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br>일수       | 1.3            |      |   |   | ○   |
| 시공<br>후<br>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113.7          |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br>무 지원 | 식              | 46.1           |      |   |   | ○   |

## 2) 보정계수

|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
| 플랜트<br>II | a.공사유형 | <b>■ 발전시설</b><br>①LNG복합 : 0.7<br>②석탄(발전500메가와트미만, 바이오메스) : 0.8<br>③석탄(발전 500메가와트) : 1.0<br>④석탄(발전 500메가와트 초과), 열병합발전 : 1.3<br><br><b>■ 에너지저장시설</b><br>⑤지상 LNG저장시설 : 0.7    ⑥지상 LNG제외 저장시설 : 0.5<br>⑦지하(암반)저장시설 : 0.9<br><br><b>■ 송·변전시설</b><br>⑧관로 : 0.4    ⑨전력구 : 0.5 |
|           | b.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및 개선 : 1.3                                                                                                                                                                                                                                            |
|           | c.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2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 3) 공사난이도

| 구분                             | 난이도 산식                                                                                                                                                                                                                                                                |
|--------------------------------|-----------------------------------------------------------------------------------------------------------------------------------------------------------------------------------------------------------------------------------------------------------------------|
| 시공이후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난이도=<math>0.011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25 \times \text{총공사비}) + \text{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2 \times \text{기계설비공사비중}) + 0.2</math></li> <li>(※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 / 총공사비)</li> </ul>                                |
| 시공전 단계<br>(총공사비<br>2,000억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난이도 = <math>0.015 \times \text{총공사비} \times (1 - 0.0011 \times \text{총공사비})</math></li> </ul>                                                                                                                                |
| 총공사비<br>2,000억원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 <math>\{(\text{총공사비} - 200) / 250\}</math></li> </ul>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li> <li>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math>\{(\text{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text{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text{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times 0.1</math></li> <li>※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li> </ul> |

## 제6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1.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PO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 1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PQ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 발주기관” 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 설계자” 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 나. 설계용역의 목적 및 방식
-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 라. 입찰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바. 질의 응답의 기간· 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사.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입찰안내서)** ①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일반사항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입찰에 관한 사항
  - 바.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사. 부록(관련 양식 등)

③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⑥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계산) ①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대통령령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 배점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                  |                  |           |
|---------------------|---------------------|------|-----------------------------------------------------------------------|------------------|------------------|------------------|-----------|
| 담당<br>건축사           | 경력                  | (20) |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                  |                  |                  |           |
|                     |                     |      |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      | 20                                                                    | 18               | 16               | 14               | 12        |
|                     | 실적                  | (15) | · 담당건축사의 <b>최근 10년간</b> 설계 실적                                         |                  |                  |                  |           |
| 10건 이상              |                     |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15                  |                     |      | 13.5                                                                  | 12               | 10.5             | 9                |           |
| 참여<br>건축사(보<br>)    | 경력                  | (15) |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                  |                  |                  |           |
|                     |                     |      |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      | 15                                                                    | 13.5             | 12               | 10.5             | 9         |
|                     | 실적                  | (10) | · 참여건축사(보)의 <b>최근 10년간</b> 설계 실적                                      |                  |                  |                  |           |
| 10건 이상              |                     |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10                  |                     |      | 9                                                                     | 8                | 7                | 6                |           |
| 담당건축사의<br>유사용역 수행실적 |                     | (20) |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 용역으로서 <b>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b> |                  |                  |                  |           |
|                     |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                     |                     |      | 20                                                                    | 18               | 16               | 14               | 12        |
| 신용도                 |                     | (10) | ·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br>·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                  |                  |                  |           |
|                     |                     |      | 0.1점이상<br>0.2점미만                                                      | 0.2점이상<br>0.5점미만 | 0.5점이상<br>1.0점미만 | 1.0점이상<br>1.5점미만 | 1.5점이상    |
|                     |                     |      | 0.2                                                                   | 0.5              | 1                | 2                | 3         |
| 업무<br>중복도           | 담당<br>건축사<br>(6)    | (10) |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 100)                  |                  |                  |                  |           |
|                     | 참여<br>건축사<br>(보)(4) |      | 100% 미만                                                               | 100~150% 미만      | 150~200% 미만      | 200~250% 미만      | 250% 이상   |
|                     |                     |      | 6 (4)                                                                 | 5.4 (3.6)        | 4.8 (3.2)        | 4.2 (2.8)        | 3.6 (2.4) |

[별표 2]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 배점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                             |                             |                      |
|------------------|-----------------------|------|-----------------------------------------------------------------------|-----------------------------|-----------------------------|-----------------------------|----------------------|
| 담당<br>건축사        | 경력                    | (18) |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                             |                             |                             |                      |
|                  |                       |      | 12년 이상<br>18                                                          | 9년 이상<br>16.2               | 6년 이상<br>14.4               | 3년 이상<br>12.6               | 3년 미만<br>10.8        |
|                  | 실적                    | (12) | • 담당건축사의 <b>최근 10년간</b> 설계 실적                                         |                             |                             |                             |                      |
|                  |                       |      | 10건 이상<br>12                                                          | 8건 이상<br>10.8               | 6건 이상<br>9.6                | 4건 이상<br>8.4                | 4건 미만<br>7.2         |
| 참여<br>건축사(보)     | 경력                    | (12) |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                             |                             |                             |                      |
|                  |                       |      | 12년 이상<br>12                                                          | 9년 이상<br>10.8               | 6년 이상<br>9.6                | 3년 이상<br>8.4                | 3년 미만<br>7.2         |
|                  | 실적                    | (8)  | • 참여건축사(보)의 <b>최근 10년간</b> 설계 실적                                      |                             |                             |                             |                      |
|                  |                       |      | 10건 이상<br>8                                                           | 8건 이상<br>7.2                | 6건 이상<br>6.4                | 4건 이상<br>5.6                | 4건 미만<br>4.2         |
| 보유 건축사(보)<br>현황  |                       | (10) | •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                             |                             |                             |                      |
|                  |                       |      | 10점 이상<br>10                                                          | 8점 이상<br>9                  | 6점 이상<br>8                  | 4점 이상<br>7                  | 4점 미만<br>6           |
| 업체의 유사용역<br>수행실적 |                       | (20) |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 용역으로서 <b>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b> 실적 |                             |                             |                             |                      |
|                  |                       |      | 5건 이상<br>20                                                           | 4건<br>18                    | 3건<br>16                    | 2건<br>14                    | 1건 이하<br>12          |
| 신용도              | 입찰참가<br>제한 및<br>별점(7) | (10) | •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br>•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감점                         |                             |                             |                             |                      |
|                  |                       |      | 0.1점이상<br>0.2점미만<br>0.2                                               | 0.2점이상<br>0.5점미만<br>0.5     | 0.5점이상<br>1.0점미만<br>1       | 1.0점이상<br>1.5점미만<br>2       | 1.5점이상<br>3          |
|                  | 신용<br>등급<br>(3)       |      |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                             |                             |                             |                      |
|                  |                       |      | A- 이상<br>3                                                            | BBB- 이상<br>2.7              | B- 이상<br>2.4                | CCC+ 이하<br>2.1              | 미제출<br>1.8           |
| 업무<br>중복도        | 담당<br>건축사<br>(6)      | (10) |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br>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                             |                             |                             |                      |
|                  | 참여<br>건축사<br>(보) (4)  |      | 100% 미만<br>6 (4)                                                      | 100~150%<br>미만<br>5.4 (3.6) | 150~200%<br>미만<br>4.8 (3.2) | 200~250%<br>미만<br>4.2 (2.8) | 250% 이상<br>3.6 (2.4) |
|                  |                       |      |                                                                       |                             |                             |                             |                      |
|                  |                       |      |                                                                       |                             |                             |                             |                      |

[부표]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 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2.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 ② ①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사업의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만 인정하고, 고시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인정한다.

### 3. 보유 건축사(보) 현황

- 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신용도

- ① 입찰참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②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 ③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       |                |                |            |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br>A3-이상 | A3-미만<br>B-이상  | C이하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br>BBB-이상 | BBB-미만<br>B-이상 | CCC+<br>이하 |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업무중복도

- ① 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 2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자. 배점기준
-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파. 실격 및 감점기준
-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

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④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④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⑥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

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 상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평가에 참고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

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15일 이상 30일 미만,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6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절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제안 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②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보칙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0조 제4항 관련)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
| 배치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 및 토지 활용도</li> <li>○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li> <li>○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li> </ul> | (20) |
| 공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li> <li>○ 공간 이용의 효율성</li> <li>○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li> </ul>             | (30) |
| 경관 및<br>주변과의 조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li> <li>○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li> <li>○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li> </ul>   | (30) |
| 기술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li> <li>○ 비용 절감 등 경제성</li> <li>○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li> </ul>         | (15)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br/>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li> </ul>                               | (5)  |

[별표 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 제2항 관련)

| 순서 | 항 목  | 세 부 사 항                  | 매 수 |
|----|------|--------------------------|-----|
| 1  | 표지   |                          | 1   |
| 2  | 계획개념 | ○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 1   |
| 3  |      | ○ 주변환경 분석<br>○ 동선 및 배치개념 | 1   |
| 4  |      | ○ 콘셉트 디자인 / 스케치 등        | 2   |
| 5  | 기타   | ○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 1   |

<비고>

- A3형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별표 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6조 제4항 관련)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
| 계획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li> <li>○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li> </ul>                                                     | (20) |
| 주요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li> <li>○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li> <li>○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li> <li>○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li> </ul> | (60) |
| 특화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li> </ul>                                                                                         | (20) |

## [별표 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 제4항 관련)

| 순서 | 항 목                | 세 부 사 항                                                                      | 매 수         |
|----|--------------------|------------------------------------------------------------------------------|-------------|
| 1  | 표지                 |                                                                              | 1           |
| 2  | 설계자의<br>경험 및<br>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br>○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br>(별도제출) |
| 3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 작품당 1       |
| 4  | 수행계획<br>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br>-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1           |
| 5  |                    |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br>-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 과제당 1       |
| 6  |                    | ○ 수행계획<br>-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 1           |

## &lt;비고&gt;

- A3형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 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 [별표 5]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34조 제4항 관련)

| 평가항목                       |                         | 배 점  | 세 부 평 가 기 준                             |       |       |       |       |
|----------------------------|-------------------------|------|-----------------------------------------|-------|-------|-------|-------|
| 설계자의<br>경험 및<br>역량<br>(30) | 담당건축사의<br>경력            | (10)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       |       |
|                            |                         |      |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      | 10                                      | 9     | 8     | 7     | 6     |
|                            | 담당건축사의<br>유사프로젝트<br>실적  | (10)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       |       |       |       |
|                            |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                            |                         |      | 10                                      | 9     | 8     | 7     | 6     |
|                            | 담당건축사의<br>대표작품<br>포트폴리오 | (10) |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       |       |       |
|                            |                         |      | A                                       | B     | C     | D     | E     |
|                            |                         |      | 10                                      | 9     | 8     | 7     | 6     |
| 수행계획<br>및 방법<br>(70)       | 업무에 대한<br>이해도           | (10) |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       |       |       |       |
|                            |                         |      | A                                       | B     | C     | D     | E     |
|                            |                         |      | 10                                      | 8     | 6     | 4     | 2     |
|                            |                         |      |                                         |       |       |       |       |
|                            | 과제에 대한<br>제안            | (45) |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       |       |       |       |
|                            |                         |      | A                                       | B     | C     | D     | E     |
|                            |                         |      | 15                                      | 12    | 9     | 6     | 3     |
|                            | 수행계획                    | (10) |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       |       |
|                            |                         |      | A                                       | B     | C     | D     | E     |
|                            |                         |      | 10                                      | 8     | 6     | 4     | 2     |
|                            | 제안서 발표<br>및 면접          | (5)  |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       |       |       |
|                            |                         |      | A                                       | B     | C     | D     | E     |
|                            |                         |      | 5                                       | 4     | 3     | 2     | 1     |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KOREA ART ENGINEERING & ARCHITECTURE CO.,LTD.

경영관리본부 / 업무부

이 사 박 철 용

본 사 (154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66

하늘법조빌딩 508호

TEL : 070-7416-4545

FAX : 031-624-0572

H,P : 010-3404-0751

서울사무소 (0478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길 14, 404호

TEL : 070-7416-4546

FAX : 02-516-8066

E-mail : [karteng@karteng.com](mailto:karteng@karteng.com)

홈페이지 : [www.karteng.com](http://www.karteng.com)